

養正義塾의 법학교육*

金孝全**

목 차

- I. 서설
- II. 설립자와 건학이념
- III. 교과목과 실제 운영
- IV. 양정의숙과 법학협회
- V. 양정의숙의 쇠퇴
- VI. 양정의숙의 교수진
- VII. 양정의숙의 졸업생
- VIII. 결론

[국문 요약]

양정의숙은 법관양성소, 보성전문학교와 함께 근대 한국에서 최초로 서양식 법학을 가르친 동격의 전문학교이다. 1905년에 설립되어 1913년 양정고등보통학교로 격하되기까지 8년 동안 존속하고 약 200명 정도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양정동문록에도 명단이 누락되어 있으며 법학전문학교로서의 양정을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이 글은 우선 당시의 신문과 잡지 등 각종 자료 속에 단편적으로 등장하는 양정의 편린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법학교육기관으로서의 양정의 면모를 재현하고 다른 법학교육 기관과의 관계 내지는 교수진과 졸업생 등의 면모를 재구성하여 근대 한국의 법학교육의 시초를 밝히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양정의숙 이외에도 한성법학교와 대동법률전문 등 법학교육기관으로서 명목만 전해지는 학교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M0001)

** 대한민국의학술원회원, 동아대 명예교수 veritas828@hanmail.net

[주제어] 양정의숙, 양정고등학교, 법학교육, 근대한국, 법학자

I. 서설

양정의숙(養正義塾)은 1905년 2월에 설립된 법률학과와 경제학과를 가진 일종의 전문학교이다.¹⁾ 위치는 서서(西署) 의영고동(義盈庫洞)²⁾으로 현재의 세종문화회관 서쪽 도림동이다.

1895년 4월에 설립된 관립 법관양성소, 1905년 1월의 사립 한성법학교, 같은 해 4월의 사립 보성전문학교와 동격의 학교로서 출발하였다. 이 중 보성전문학교는 오늘날의 고려대학교의 전신이며, 법관양성소는 법학교와 경성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등으로 계속되다가 광복 후 국립 서울대학교에 흡수되었으며, 한성법학교는 경영난으로 그 해에 폐교되었고, 양정의숙은 1913년 조선교육령에 의해서 폐지되고 교명을 양정고등보통학교라고 하였으며, 오늘날 「양정고등학교」로서 그 이름만이 남아있을 뿐이며 법학전문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³⁾

비록 8년간의 단기간 존속했지만 양정 출신의 영향력은 법관양성소나 보성전문학교에 못지않게 각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재들이 많이 있었다. 여기

1) 양정의 역사에 관하여는 『양정백년사 1905-2005』(2006); 『양정의 얼굴: 개교60주년기념』(1965); 법관양성소에 관하여는 김효진, 『법관양성소와 근대 한국』(소명출판, 2012); 보성전문에 관하여는 『서구 근대학문의 수용과 보전』(고려대학교, 1986) 참조.

2) 의영고(義盈庫)는 조선시대에 기름·꿀·황납(黃蠟)·소물(素物)·호추(胡椒) 등을 관장하던 곳이다. 황납이란 봉밀의 부산물로서 촛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며, 소물은 어류 또는 육류를 사용하지 아니한 소찬(素饌)용의 각종 물품을 말하며, 호초는 일명 후추라고 하는 것이다. 의영고는 태조 원년에 설치되어 1885년(고종 19)에 폐지되었다. 『전률통보』(상권)(법제처, 1971), 51면 참조.

3) 이영석, 양정의숙의 혼을 찾아서, 양정의숙 연구발표회가 2007년 5월 15일 양정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 2008년 5월 6일부터 20일까지 양정중고등학교와 양정총동창회 주최로 「대한제국 법학전문학교 교과서 특별전」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렸다. 『조선일보』 2008년 4월 25일자 “양정중·고교, 국내 첫 사립 법학전문학교였다.”

서는 한국 법학교육의 원조로서의 면모를 당시의 각종 자료를 통하여 개괄적으로 서술해 보기로 한다.

II. 설립자와 건학이념

1. 설립자 엄주익

양정의숙의 설립자는 춘정(春庭) 엄주익(嚴柱益, 1872-1931)이다. 字는 순조(舜朝). 그는 29세인 1900년 통신원 전화과 주사로 관계에 투신하여 1901년에 내장원 종목과장(種牧課長), 1902년에 군부 포공국장(砲工局長), 한성부 판윤, 1903년에 군부 협판, 1904년에 법부협판, 육군참장, 군부협판, 군부대신서리, 육군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엄비 전하의 동생이다.⁴⁾ 1904년 군부협판으로 있을 때 근대적인 군사제도를 시찰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가 서양의 새로운 사조에 접한 일본의 신문물에 깊은 감명을 받고, 사회의 급선무는 교육의 보급이라고 생각하여 양정의숙을 창립하게 되었다.⁵⁾

귀국하여 안중원(安鍾元), 이철우(李哲宇), 윤정석(尹晶錫), 박용숙(朴容淑), 장현주(張炫周), 김진현(金鎭賢), 한만용(韓晩容) 등과 뜻을 같이 하여 근대적 교육의 보급을 목적으로 학교설립을 추진하였고, 유지방침은 출연(出捐)에 의함으로써 학교의 형태를 의숙(義塾)으로 결의하였다. 발기인회에서 숙장에 엄주익, 숙감에 김효익(金孝益), 찬무원에 안중원으로 정하고, 강사로는 김상연, 장도, 신우선, 석진형, 유문환을 연빙하고, 사무원으로는 송희정(宋熙鼎)을 결정하였다. 1905년 2월에는 양정의숙의 설립청원서를 대한제국 학부에 제청하여

4) 『朝鮮人名資料事典』 第1卷(日本圖書センター, 2002), 164면.

5) 『대한제국관원이력서』(탐구당, 1972), 370면; 『양정의 얼굴: 개교60주년기념』(1965), 91-100면; 『양정백년사 1905-2005』, 47-49면; 『황성신문』 1906년 4월 24일자; 『교육학대사전』(교육서관, 1989), 650-651면.

같은 해 4월 10일 인가를 받았다. 또한 엄주익은 육군법원장 재직시 황귀비 전 하와 함께 귀족 여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놓기도 하였다.⁶⁾

한일합방 당시에는 지후관(祇侯官)의 직에 있었다.⁷⁾ 1910년 국권상실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체 관계를 떠나 교육사업에만 심혈을 기울였다. 묘는 경기도 광주 구천면 암사리에 있다.⁸⁾

2. 건학이념

양정의숙의 창학이념은 「몽이양정(蒙以養正), 양심정기(養心正己)」로서 신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교육의 지도이념을 제시하였다. 몽이양정은 원래 주역(周易)에 나오는문장으로서 「순수한 상태의 인간에게 바른 것을 키워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가르치는 이의 마음가짐을 나타내고 있다. 양심정기는 「착한 본성을 갖고 닦아 올곧은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배운다」는 의미로서 배우는 이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바른 것을 길러 세상에 은공을 입히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기른다」는 내용으로도 알려 있다. 주역의 「몽이양정」 편에 있는 이 내용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일러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주역에 있는 수많은 내용 중 「몽이양정, 양심정기」를 건학이념으로 내세운 이유는 무엇이며 또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양정」으로 채택되었는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직 없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조선 말기의 학자 윤경규(尹庚圭)가 왕세자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모은 『양정록(養正錄)』에서 그 해법을 찾는 견해도 있다.⁹⁾ 생각건대 이것은 오늘날의 용어로는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의미로 풀이하더라도 크게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6) 『황성신문』 1906년 4월 24일자 「女校設立」.

7) 『대한매일신보』 1910년 8월 28일자 「祇侯官渡日」.

8) 『寧越嚴氏大同譜』 卷之七, 318면.

9) 『양정의숙의 혼을 찾아서』, 12면.

또한 을사보호조약을 전후로 하여, 멀리는 강화도조약으로부터 시작되는 개항 이래의 조선왕조의 쇠퇴는 모두 만국공법과 조약의 이름으로 자행된 것이며, 국내정치의 문란은 바로 당시의 용어로 법률과 장정이 올바르게 서지 못한 탓이라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법률을 가르치는 법학전문 학교를 설립하고 법률을 공부하는 것이 화급한 당면과제였다.

▲ 官立 法官養成所와 私立 普成學校와 養正義塾 等 法律專門學校에 養成法學士와 法學卒業生이 不恨不足호 則 法律을 不知함이 不是라 法律을 不用함이 現今 缺點되는 事이라.¹⁰⁾

그러나 이 기사에서 보듯이 교수와 학생 모두 인적으로 빈곤하고 시설마저 열악한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Ⅲ. 교과목과 실제 운영

1. 교과목

『황성신문』에 실린 학원모집 광고를 보면 다음과 같이 상세한 법학 관계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¹¹⁾

◎ 今에 政治 法律 經濟 等 高等學問으로 一般國民을 教育하기 爲하야 教師 金祥演 張燾 申佑善 石鎮衡 四氏를 延聘 教授호 티오니 願學 僉君子는 本 義塾으로 來臨 問議호시읍.

10) 『만세보』 1906년 11월 10일자.

11) 『황성신문』 1905년 4월 1일자.

本 義塾 處所는 西署 英語學校 後谷 第十八統 一戶

教課 及 年級

第一年級

國家學 法學通論 經濟原論 民法總論 刑法總論 萬國歷史 算術 日語

第二年級

刑法各論 民法物權 債權 行政法總論 各論 商法總論 各論 財政學 日語

第三年級

國際公法 國際私法 貨幣論 銀行論 近時外交史 日語

試驗科目

國漢文으로 讀書 作文

但 官公私立學校에 普通科 卒業證이 有호는 人은 試驗을 不要호.

入學人의 年齡은 十七歲 以上으로 定호.

試驗日字는 四月 十九日[陰 三月 十五日] 上午 十二點으로 定호.

開學日字는 追後 廣告호.

私立養正義塾長 嚴柱益

塾監 金孝益

양정의숙은 5월 12일로 개학 일자를 정하고 다시 제2회 학원모집 광고를 내고 있다.¹²⁾ 『황성신문』은 『양정개학』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去 十二日 上午 十二時에 私立 養正義塾을 開學호았는디 學徒 七十餘名과 校長 教師與來賓이 一齊會同호야 鄭重호는 開學式을 舉行호았다더라.¹³⁾

12) 『황성신문』 1905년 4월 26일자.

13) 『황성신문』 1905년 5월 15일자.

양정의숙의 교사와 시험결과에 대한 보도는 아래와 같다.

◎ 養塾學期試驗 私立 養正義塾은 法律專門인디 塾長 嚴柱益 教師 張도 金祥演 石 鎮衡 俞承謙 諸氏가 熱心教育호는 效果로 學生 諸氏의 學業이 大進호는 實地가 有호 디 學期試驗의 成績이 如左호니 第二年級에 尹宇植 金癸根 洪達厚 三人은 優等이오 白亨基 金浩乘 白寅基 朴昌根 崔瑗植 朴興寬 朴益相 金鎮模 高翊相 金成集 金潤錫 高錫柱 金景濟 金鎮禹 崔在澤 洪在鵬 高孝源 劉秉필 鄭熙宣 以上 二十二人은 及第오 第一年級에 徐鳳勳 一人은 優等이오 李鍾運 趙萬熙 崔炳翰 韓容元 尹圻 金應說 金丙 濟 金演默 崔炳翰 九人은 及第이라 호니 諸氏는 益益勉勵호야 匡世良材을 作成하기로 熱望하노라.¹⁴⁾

또한 앞서 보았듯이 법관양성소나 보성전문학교와 마찬가지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 교과서

교과서는 종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세 개의 법률전문학교가 거의 동일한 교재와 동일한 강사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다. 현재 남아 있는 교과서 표지에 『양정의숙』이라고 붓글씨로 책의 소유자가 자신의 학교 이름을 적은 책도 있다. 한편 양정의숙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률강의록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였다.

● 法律講義錄 北部 北壯洞 修文書館에서 一般同胞의 法律上 知識을 啓發호기 爲 호야 私立專門 養正義塾의 編裁호는 法律講義錄을 發賣호다더라.¹⁵⁾

14) 『만세보』 1906년 11월 27일자.

15) 『대한민보』 1910년 3월 13일자.

이와 같은 강의록의 발간은 일본의 개명기에도 유행하던 방법이며,¹⁶⁾ 이것은 통신강의록의 형태로 발전하여 일제시대에도 계속되었다. 법관양성소에서는 무상으로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지급하고 매월 교과서 대금을 징수하였다. 여기의 수문서관에서는 여러 가지의 법률 책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다.¹⁷⁾

3. 토론회

토론회는 비단 양정의숙만의 독특한 것은 아니지만 토론의 문제와 상황을 등을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다.

◎ 養正討論 來土曜 九日 下午 四時 養正義塾에서 經濟에 關한 研究討論會를 開한 다는디 其 問題는 如左 하니 襄者 日本政府로서 一千萬圓의 借款을 得來 ㅎ앗스則 該 金額의 入來을 從 ㅎ야 我國 資本에 如何한 影響이 及 ㅎ나뇨 ㅎ는 問題라더라.¹⁸⁾

토론은 학내외에서 일반적인 문제로부터 법률이나 경제와 같이 전문적이고 시사적인 테마를 다루었다.

◎ 兩校生徒討論 昨日 下午 七時半에 養正義塾과 普成專門學校 學員 等이 基督青年會에 會集 ㅎ야 人才는 今勝於古라는 問題를 討論 ㅎ앗다더라.¹⁹⁾

◎ 養正討論會 私立養正義塾 第二年級 學徒中 諸氏가 發起 ㅎ고 智識發達目的으로

16) 일본의 사정은 마루야마 마사오, 가토 슈이치, 임성모 옮김, 『번역과 일본의 근대』(이산, 2000) 참조.

17) 상세한 것은 김효진, 『번역과 근대한국: 법학과 국가학 문헌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한림대) 창간호(2008) 및 동인, 『법관양성소와 근대 한국』(소명출판, 2012)에 채수록 참조.

18) 『황성신문』 1906년 6월 8일자.

19) 『만세보』 1906년 12월 2일자.

一討論會를 設立하고 每 日曜日 下午 七時에 開會호는디 去 三十日(卽 日曜) 下午 七時에 第二回 通常會를 開호고 『民法을 制定호미 可乎아 否乎아』호는 問題로 討論호았는디 名譽紳士 韓錫振氏가 臨時批評長으로 批評호았고 一般 來賓 及 傍聽이 喝采不已호야 漸漸 前進之道가 有호다 호니 吾儕는 養正義塾 一般學徒의 日進又進호을 贊揚不已호노라.²⁰⁾

민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시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였던 것으로, 또 일찍이 『독립신문』은 논설 『민법론』에서 독일 민법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독일국의 보통 민법이란 것은 통일호기를 위호야 제정호는 법률이라. 근래에 구라과 제국에서 여러 가지 민법 법전을 편집호야 데일 조흔 법으로 쓰나니 (...) 민법의 편제를 일제히 변경호미 모든 나라들이 독일국 법식을 취용호기에 이르렀더라.²¹⁾

또한 『황성신문』은 논설에서 이렇게 강조한다.

(...) 大抵 法部之第一機關은 卽法律之完整也니 現今刑法大全이 雖已頒行이나 頗多 矛盾而味陋호니 亟宜改訂而完全之호며 如民法商法도 不得不制定而頒布호야 使民人 으로 俱知法律之一定然後에 犯者-鮮而法乃行호지니 右陳兩件이 實當今之急務也.²²⁾

또한 유옥경도 민법전편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²³⁾

이러한 토론회는 장안의 인기를 모은 사건의 하나였기 때문에 『만세보』에서 는 양정의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장문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20) 『만세보』 1907년 1월 6일자.

21) 『독립신문』 1899년 8월 12일자.

22) 『황성신문』 1906년 6월 12일자.

23) 俞鈺兼, 『私法典編纂의 必要』, 『法政學界』 제1권 1호(1907), 10-15면 참조.

◎ 養正義塾 養正義塾에서 每日曜日에 學生諸君이 討論會를 設호야 再昨日 討論會를 開호고 聽賓을 延請호야 多數 名士가 會集호얏는디 本 記者도 末席에 參列호야 光榮을 不勝호는 바라.

當日 問題는 富國之策이 工勝於農이라. 可便正演議는 高翊相 金景濟 兩氏오 否便正演議는 金炯均 金應說 兩氏오 續論은 文基鼎 洪達厚 金癸根 尹宇根 崔胤植 金浩秉 六員인디 辨論이 明快호고 氣運이 活潑호야 其 學問 程度를 揣料하깃고 其他 學員 諸氏가 拍手 喝采호는디 舉皆 容貌端正호고 氣質聰俊호야 可히 前途大進의 步驟를 期望호 勃勃한 英氣를 見호지라.

于是에 傍聽호는 名士 諸氏도 其 造詣를 贊成하기 爲호야 劉元杓 金祥演 洪肯燮 三氏가 次第 演說호야 討論을 批評도 호고 學問을 勸勉도 호야 愉快호 盛況을 呈호는지라.

本 記者가 各般 學校를 多數 觀光하얏스디 同塾의 實況을 果然 創睹한 비라. 欽服호고 歡喜호야 其 由來를 略說하야 十分 贊成호는 同情을 表호노니

是塾은 光武 九年 三月에 私立호얏는디 位置는 西署 義盈庫洞이오 出席學員은 三年級이 四十餘名이오 學科는 法律이오 資格은 專門大學校이라.

塾長 嚴柱益 塾監 安鍾元 贊務 韓晚容 金孝益 韓錫振 劉在호 諸氏가 盡心盡力호야 每月 三百餘元 經費를 塾長이 擔負호고 如하야 非常호 困難을 經호야 辛勸維持호는디.

日本에 留學호야 政治 法律 經濟 各科의 卒業호고 歸國호 金祥演 石鎮衡 張도 劉文煥 俞承兼 五氏를 延聘호야 熱心 教授호므로 教育成績이 此에 達한지라.

本 記者는 養正義塾 青年學生諸君의게 一言을 舉似하노니 教育을 受호는 性質이 一 顆璞玉을 治호고 同一호니 店主의 費力과 玉王의 手術이 多大한 功力을 費盡호야 良好호 結果를 期待호는 者라.

然이나 璞玉의 體質이 椎鑿으로 琢호고 沙石으로 磨호는 諸般辛苦를 堪耐호야야 畢竟 溫潤호 性を 保存호며 璀璨호 光을 發揚호야 一種 珍寶物을 成호나니 及其功用處는 黍稷粢盛의 瑚璉도 作호 거이오 大放厥聲호는 王珮도 作호 것이오 天地禮幣로 用호 珪璋도 作할거이니 此 皆 諸君의 成就호 前途이라. 此로 諸君을 祝賀호거니와 一刻이라도 放心호야 琢之磨之호는 辛苦를 堪耐키 不能호면 非石非玉의 一塊璞에 不過호지니 此로 諸君을 警省하노니

此 一言이 養正義塾 學生 諸君의게 舉似함을 推하여 全國 青年 諸君의게 普及을 希望호노라.²⁴⁾

◎ 三處生徒聯合討論 養正義塾에서 法官養成所와 普成專門學校 兩處 生徒를 請邀하여 國民演說臺에서 聯合大討論을 開한다는 說은 已揭하였거니와 去 日曜日에는 未備한 事情이 有하여 來 日曜日[二十二日]로 退定하여 刑法問題와 經濟問題로 討論한다는디 其 問題가 如左하더라.

刑法問題는 正條에 有期의 自由刑과 金刑은 各其 高低度에 範圍를 設定하여 斟酌適用케 함이 可할가 其 限度를 預先 確定함이 可할가

經濟問題 私益의 集合으로 公益이라 稱함을 得乎아 否乎아.²⁵⁾

● 演說臺不許 養正義塾에서 來 日曜일에 普成專門學校와 法官養成所와 聯合討論會를 國民演說臺에 開會할 次로 一進會에 交涉承諾하여 各 社會에 通牒하였더니 該 會中에서 有何層節討인지 更論不許借호함으로 事係難處라 하더라.²⁶⁾

● 法學討論會 養正義塾에서 普成專門學校와 法官養成所 兩處 生徒를 請邀하여 國民演說臺에서 討論한다는 說은 已報하였거니와 再昨日 正午에 同 三處 生徒가 一齊히 國民臺에 會同하여 前記의 問題를 依하여 各 三人式 討論한 後에 講師 張燾, 兪承謙 兩氏가 批評하였고 來賓中에 李冕宇, 羅壽淵 兩氏가 勸勉하였더라.²⁷⁾

● 法律討論 普成專門學校와 養正義塾의 職員 及 學徒 諸氏가 昨日 下午 七時에 青年會館에 會同하여 法律上 問題로 討論하였더라.²⁸⁾

24) 『만세보』 1907년 2월 5일자.

25) 『만세보』 1907년 6월 20일자.

26) 『황성신문』 1907년 6월 22일자.

27) 『만세보』 1907년 6월 25일자.

28) 『황성신문』 1908년 12월 6일자.

이와 같이 법학전문학교를 중심으로 이미 토론문화가 성숙하고 있었다.

또한 동문 밖 영도사(永道寺)에 나가서 소송연습회를 가지기도 하였는데,²⁹⁾ 이것은 오늘날의 모의재판(Moot Court)과 같은 것이며 이론적인 수업 외에 실무 교육도 중요시하였다. 이 소송실습절차에서 행한 고소장, 예심결정서 그리고 판결서는 『황성신문』에 전문이 연재되기도 하였다.³⁰⁾

이 소송연습회는 법관양성소에서도 같은 영도사에 나가서 실시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법부와 평리원, 한성재판소의 일반 관리도 합동하여 참관하였다.³¹⁾ 또 보성전문학교에서도 같은 영도사에서 실시하였는데 황성신문은 「특히 그 연습실황을 무루(無漏) 게재하여 소송에 관계한 일반 동포의 일람을 공(供)코져 하노라」고 하면서 전문을 신고 있다.³²⁾

학생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법부대신은 그 경비를 전담하겠다고 나서기도 하였다.

● 法官鍊習 法部大臣 李夏榮氏가 近日 各 法律學徒들이 訴訟鍊習場을 開하고 裁判處決을 依法公決한다는 說을 僞聞하고 將次 該部 官吏와 平漢兩裁 一般官人을 領率하고 訴訟鍊習을 設行되 各 法律學徒中으로 原被告와 辯護士을 選定할 터인데 當日 經費는 自己가 全擔하기로 決定하였다더라.³³⁾

● 소송연습 제작일에 양정의숙 학도들이 영도스에 나아가서 송스흔 법을 연습하였는데 평리원과 한성재판소의 관리들도 가서 참관하였다더라.³⁴⁾

29) 『황성신문』 1907년 7월 12일자 「訴訟研習會」.

30) 『황성신문』 1907년 7월 16일, 17일 및 18일자.

31)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14일자 「養所練習」.

32) 『황성신문』 1907년 6월 5일자 및 6일자.

33)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22일자.

34)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16일자.

양정의숙, 법관양성소 그리고 보성전문학교는 서로 경쟁적으로 실무교육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4. 경제과 등 신설

또한 양정의숙은 법관양성소나 보성전문학교와 동격의 법률전문학교로서 학생의 집단 진출입이 있었고, 1908년 2월에는 일어야학과를,³⁵⁾ 4월에는 경제과를, 그리고 1910년에는 영어야학과를 설치한다.³⁶⁾ 특히 1908년 4월 제1회 졸업식을 가진 양정의숙은 『뜻하지 않게 타의에 의한 경제과 특설』³⁷⁾을 하게 되었다.

● 教授經濟 普成專門學校에 經濟科 退學生 三十四人이 養正義塾에 連名請願하고 此科를 教授하라 함으로 此 經濟科를 特設하고 教授하기로 決定하였다더라.³⁸⁾

● 請入養正 普成專門學校 二年級 退학한 經濟科 生徒 二十四人이 養正義塾에 入學하기로 聯名 請願하였다더라.³⁹⁾

● 經濟設課 普成專門學校 二年級 經濟科生으로 退학한 諸學徒가 養正義塾에 入學하기를 請願한 事는 前報에 已揭어니와 該塾에서 經濟科를 特設하고 來 十六日부터 開학한다더라.⁴⁰⁾

● 三氏留學 普成專門學校 經濟科 學生들이 一齊히 養正義塾으로 退去하였는데 該學生中 金河琰 吉昇翼 徐承孝 三氏는 如前히 普成學校에서 上學하겠다 하니 該 校主

35) 『황성신문』 1908년 2월 9일자.

36) 『황성신문』 1910년 4월 19일자 광고.

37) 이기준, 『한국경제학교육사연구』(한국연구원, 1982), 133면.

38) 『황성신문』 1908년 3월 7일자.

39) 『대한매일신보』 1908년 3월 5일자.

40) 『대한매일신보』 1908년 3월 8일자.

가 其 趣旨을 嘉尙히 녀여 來月 五일에 日本으로 派送호야 留學케 ㅎ다더라.⁴¹⁾

● 正塾卒業式 養正義塾에서 第一回 卒業生이 二十二人인디 十九일에 禮式을 開호고 證書授與式을 舉行호일 時에 塾長 嚴柱益氏가 式辭 及 勸勉을 陳述호고 塾監 安鍾元氏는 學事를 報告호고 講師 石鎮衡 張燾 兩氏와 來賓 兪吉濬 洪肯燮 兩氏가 次第로 勸勉祝辭호 後에 卒業生 金癸根氏가 答辭호고 軍樂隊는 音樂을 奏호며 式場을 撮影호고 茶果을 進호 後에 閉式호았는디 賞品은 本塾에서 冊子를 頒給 後 塾長 嚴柱益氏는 字典 二十二帙을 寄付호고 紳士 崔永年氏는 鉛筆 二十二打로 高龍鎭氏는 空冊 二十二券과 鉛筆 二十二打로 洪肯燮氏는 牡丹花 二十六朶로 寄付호 故로 ——頒給호았다더라.⁴²⁾

경제학 과목은 경제원론, 재정학, 화폐론, 은행론이며 「경제원론」이란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⁴³⁾ 경제학계 교수로서는 김상연, 신우선, 유승겸을 열거하는 견해⁴⁴⁾도 있으나, 유치형이 담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유치형이 아니라면 적어도 교과서는 유치형 강술 신해영 교열, 『경제학』을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⁴⁵⁾

이처럼 법률과는 1908년 4월에 제1회 졸업식을 거행했으며 경제과는 보성전문에서 전학 온 34명이 야학으로 출발하여 1910년 4월 2일 제1회 졸업식을 갖게 된다.

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은 일본의 경우 일찍이 『영화대역수진사서(英和對譯袖珍辭書)』(1862)에서 ‘Political economy’를 ‘경제학’, ‘Economy’를 ‘家事スルフ, 儉

41) 『황성신문』 1908년 3월 25일자.

42) 『황성신문』 1908년 4월 21일자.

43) 이기준, 『한국경제학교육사연구』, 136면.

44) 이기준, 위의 책, 136면.

45)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개화기교과서」 코너에는 유치형의 『경제학』이 소장되어 있으며 그 표지에는 붓글씨로 「양정의숙」이라고 쓰여 있다. 이 책은 전체 199면이며 서문이나 판권은 붙어 있지 않다.

約スルフ'로 소개하였고,⁴⁶⁾ 중국에서는 '이재(理財)'로 알려지고 있었다. 한국에는 경제학과 이재학이 동시에 수용되고, 1898년의 한성의숙(樂英義塾)과 홍화학교, 법관양성소의 교과목 등에도 들어있었으며, 1905년 보성전문에서 이재학과(理財學科), 1908년 양정의숙에서 경제과가 신설됨으로써 점차 보급되기 시작하였다.⁴⁷⁾

한편 1906년의 법관양성소규칙에서는 교과목으로서 '경제학'과 재정학을 열거하고 있으며, 1908년 3월의 법관양성소학칙에서는 '이재학'으로 표기하더니 13일 만의 학칙개정에서는 다시 '경제학'으로 바뀌었다.⁴⁸⁾ 이렇게 볼 때 이재학과 경제학이란 명칭이 공존하다가 1908년을 기점으로 경제학이 공식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⁴⁹⁾

46) 堀辰之助編, 『英和對譯袖珍辭書』(1862), 245면, 杉本つとむ編, 『江戸時代翻譯日本語辭典』(早稻田大學出版部, 1981), 1010면에 영인.

47) 근대한국에서의 경제학발달사에 관한 문헌은 이기준, 『한말 서구경제학도입사연구』(일조각, 1985); 동인, 『한국경제학교육사연구』(한국연구원, 1982); 안병직, 「구한말 경제학교육과 교과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연구회편, 『한국교육사연구의 새 방향』(김문당, 1982), 400-439면; 조기준, 『한국경제학의 시원에 관한 연구: 보전 이재학과와 관련해서』, 『근대서구학문의 수용과 보전』(고려대학교, 1986), 287-339면 참조.

근대경제학의 발달과 관련하여 보성전문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견해(예컨대 김균·이헌창 편, 『한국 경제학의 발달과 고려대학교』, 고려대출판부, 2005, 64면)가 있으나, 당시에는 동일한 사람이 법관양성소, 보성전문, 양정의숙 등에 동시에 출강하였고, 또 법관양성소 외에는 모두 전임교원이 없었으며, 경제학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법학에 비하여 훨씬 낮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학교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이 책의 편자들은 보전의 교수와 강사진의 주요 경력과 논저(93-95면)의 작성에서 이기준 교수의 『한말 서구경제학도입사연구』 부록의 부정확함과 오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활자화된 것을 일단 의심하고 확인하는 데에서 학문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것이다.

48) 법무 고시 제2호 법관양성소학칙 개정(관보 율희 2년 4월 11일), 국회도서관, 『한말근대법령자료집 VI』, 1971, 312-313면.

49)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12일자 잡보 「학문의 필요」에서, 아담 스미스는 '이재학'을 저술하였다고 소개한다.

5. 법률전문학교의 의견서

우선 당시의 법제도와 사법 운영의 실제 모습을 간단히 살펴본다. 아직 근대적인 법체제가 완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법제를 모델로 한 전통적인 법제와 서구식의 근대적인 법제가 혼재하고 있었다. 예컨대 1905년에 제정된 형법대전의 실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났으며,⁵⁰⁾ 또한 재판의 불공정 내지는 전근대적인 형사 사법을 운영하는 모습 등이 부정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독립신문』을 비롯하여 『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에 자주 심각하게 보도되었다.

한편 새로운 법제정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각 법률전문학교의 의견을 구하기도 하였는데 이에겐 물론 양정의숙도 참가하였으며 그 보도는 다음과 같다.

◎ 法律批評 法部에서 新起草 法律案件을 各部에 分送 하였다는 說은 昨報에 已揭 하얏거니와 各 社會團體에도 幾件을 送交하여 各其 條文下에 批評意見書를 陳述하여 還付하라 하얏는 故로 礪洞 普成專門學校에서는 刑法討論會를 組織하여 義務的으로 各其 意見을 陳述하여 互相 批評하기로 作定하였더라.⁵¹⁾

이에 대해서 만세보는 논설 「신제법률안의견진술(新制法律案意見陳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法部에서 法律案件을 新起草 해야 各部와 各 社會團體와 各 法律專門學校에 一件式 送交 해야 批評意見書를 陳述 還付 하라 혹은 本紙에 揭佈 하였거니와 普成專門學校에서 刑法討論會를 組織 해야 義務的으로 各其 意見을 陳述 해야 互相 批評한다 하고 養正義

50) 『만세보』는 「法部에서는 刑法大典을 准行 한다 하나 用法 함이 박지 못 해야 各 裁判所에 枉法 出入이 浩繁 해야 判事를 拘拿한 事까지 잇고」(1906년 8월 9일자), 또한 『대한매일신보』는 형법대전을 개인이 편찬하여 인민에게 강매하는 사례까지 보도하고 있다(1909년 9월 15일자).

51) 『만세보』 1906년 11월 29일자.

塾에서도 各其 意見書를 陳述한다는 報道가 有하니 我韓 天地에 法律案의 各 意見을 能히 請求함도 一大奇事이요 學校生徒의 法律을 能히 討論한다함도 亦是 一大奇事이 로다.

試思하라. 我韓 五百年에 通用호든 法律이 果然 何如호뇨. 所謂 大明律은 苛細繁劇 한 一法門이요 所謂 大典通編은 壓制酷烈호 一法門이라 호되 勒制政治下에 人民을 誑惑케 호야 法律書를 一套秘諱잡書와 如히 深藏하고 誅戮杖流의 刑法을 各其 時色 當局者의 意見으로 臨時制定호야 一定호 律文이 無호으로 外樣호로는 舊日刑曹에 一個 律官이라는 各色을 置호고 及 其 律文을 照할 때에 刑曹判書도 勢道家의 分付를 奉承호야 猶恐不及호거든 何況 一律官이 敢히 一寸律文을 照決호 手段이 有호이요.

然則 大明律이나 大典通編은 一套文具에 不過하며 所謂 法官과 律官은 一套人具에 不過호고 但히 勢道家 口舌上에 現行律이 懸한지라. 所謂 更張 以來 十餘年에 腐敗호 舊習을 倂用호야 不應爲而爲之律과 如한 條이나 預用하고 森嚴호 三尺은 正確히 照用호한다고 謂키 難하니 假令 新起草한 法律을 專門家 各 意見을 交換호야 厘正頒佈한다 호야도 司法官의 枉法은 自在호고 公信이 昭著키 不能할 境遇에는 萬券의 法律案이 焉用이리요. 此 法律은 法部이나 裁判所에 存在호 文房物品이 不是라. 多數 刊行호야 全國人民으로 自國法律을 人人習熟케 한 然後에 警省心도 發호야 罪過에 犯치 으니 하 且 司法官의 枉決호도 甘受치 아니호 거이라고 斷言호노라.⁵²⁾

이상은 당시의 실정법인 대명률과 대전통편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것을 비판하면서 혼란한 법체제와 전근대적인 형사 사법 운영의 일단을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⁵³⁾ 새로운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률전문학교의 의견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의 일대 쟁거로서 보도할 정도로 법과 일반 인민의 생활은 동떨어져 있었다.

52) 『만세보』 1906년 11월 30일자.

53) 상세한 것은 조지만, 『조선시대 형사법으로서의 「대명률」과 國典』(서울대 박사 논문, 2006) 참조.

IV. 양정의숙과 법학협회

법학협회는 외국에서 법률, 정치, 경제를 공부한 사람과 국내에서 이를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한국 최초의 사회과학 분야의 학회이다.⁵⁴⁾ 법학협회의 창립총회는 1908년 3월 15일 양정의숙에서 개최되었으며 각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었다.

양정의숙에서 개최된 창립총회의 모습은 이 학회의 기관지인 『법학협회잡지』 창간호⁵⁵⁾에서 함께 보는 듯이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념 촬영한 69인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이 법학협회는 같은 해 6월 21일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정치, 법률, 경제의 세 분과로 나누었으며 논제는 정치 분야에서 「국가의 정치는 전제정체가 가호(可乎)아 입헌정체가 가호아」이며, 경제 분야에서는 「조세부과에 누진세주의를 용(用)하는 가부 여하」, 그리고 법률 분야에서는 「채권양여와 당사자교체에 기인한 경개(更改) 중 특히 채권자교체에 기인한 경개를 구별함이 가호(可乎)아 부호(否乎)아」였다.

법률 분야에서는 석진행이 법관양성소를 비롯하여 양정의숙과 보성전문에 출강하던 당대의 법률가이며, 김계근(金癸根)은 양정의숙 1회 졸업생이며, 윤우식(尹宇植) 역시 양정의숙 출신으로 양정의숙 출신이 다수 참석하고 있다.

기타 양정의숙 내에서는 ‘부인 연합 자선 발기회’를 열기도 하였으며,⁵⁶⁾ 또 다른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훈련원(전 동대문운동장)에서 개최된 ‘관사립학교 추계연합운동회’에 참석하여 학원들은 각자의 기량을 펼치기도 하였다.⁵⁷⁾

54) 최종고, 『한국법학사』, 391면 이하 참조.

55) 『법학협회잡지』 창간호는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사진은 『시민과 변호사』 2000년 7월호에도 수록되어 있다.

56) 『황성신문』 1907년 9월 2일자.

57) 『황성신문』 1907년 10월 27일자(官私立學校秋季聯合運動會景況).

V. 양정의숙의 쇠퇴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고 1907년의 정미7조약(한일협약)으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지배를 더욱 강화하였다. 1907년 7월 12일에는 총리대신 이완용과 통감 소네 아라스케(曾彌荒助, 1849-1910)⁵⁸⁾ 사이에 조인된 『한국의 사법 급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각서』⁵⁹⁾ 이른바 기유각서(己酉覺書)를 통해서 조선은 사법권과 감옥사무권도 일본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이 각서에 의해서 조선의 법부와 재판소는 폐지되고 그 사무는 통감부의 사법청으로 이관되어 일본이 조선의 사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재판소구성법⁶⁰⁾이 개정되고 일본인을 조선의 관리로 직접 임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급 재판소의 관점사와 서기도 대부분 일본인으로 채워졌다. 재판소 용어도 일본어가 공식용어로 사용되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영토 안에서 통역관을 통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인으로서 판검사나 변호사는 물론 재판소 서기마저 될 수 있는 희망이 좌절되었으며 법률전문 학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양정의숙의 강사 석진형은 외국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소송연습도 필요 없다고 하기 이른다.

● 演習停止 養正義塾에서는 去 日曜日 永導寺에서 訴訟演習을 設行할 次로 學員 들이 會費를 每人에게 五十錢式 收合했더니 講師 石鎭衡氏가 說明하기를 目下 法典 調査局에서 起草하는 訴訟行政法이 本年 內에 頒佈될 터인즉 外國訴訟行政를 演習할 必要도 無하고 金融枯渴한 時에 不生産消費를 設함이 不可하다 故로 其 收合했

58) 소네에 관하여는 정일성, 『인물로 본 일제 조선지배 40년: 1906~1945』(지식산업사, 2010); 친 일문제연구회 엮음, 『조선총독 10인』(가람기획, 1996), 223-224면 참조.

59) 이 각서의 원문은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구한말조약취찬 상권』(1964), 93-95면 참조.

60) 재판소구성법의 영역은 김효진, 『English Translation of The Korean Law of the Constitution of the Courts of Justice etc.(1)(2)』, 『법사학연구』 제22호·제23호(2000) 및 영인본(관악사, 2004) 참조.

던 金錢을 還收分給하고 此 演習을 停止하였다더라.⁶¹⁾

이처럼 당시 사법권이 일본에게 강제적으로 위임 당한 상태여서 조선인으로서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는 희망도 좌절되어 법학이나 법학교는 일반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이것은 법학교 뿐만 아니라 양정의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원자가 거의 없게 되고, 각 신문의 사설을 비롯하여 뜻 있는 인사들이 개탄하게 된다.

● 入學稀少 養正義塾에서 曩日 生徒를 募集하였는데 法律科에 五人 經濟科에 二人이 被選된 故로 一年班을 設立지 못하고 再明日에 又爲增모홀 터인데 入學請願者가 稀少하다더라.⁶²⁾

그러나 점차 학생 수가 줄어들어 한일합방 직전에는 야학으로 바뀌어 학생을 모집하였다.

● 司法委任의 結果 養正義塾의 法律晝學生이 零星함을 因하여 來秋期에 募集하는 學生은 夜學으로 教授하라 協議한다더라.⁶³⁾

한편 법관양성소가 법학교로 명칭을 바꾼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며 마침내 1910년 3월 12일의 광고에서는 「법학교(전 법관양성소)」라고 시작하고, 나중에는 「전 법관양성소 관립 법학교」라고 표시하여 위의 2월 13일자 광고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61) 『황성신문』 1908년 10월 9일자.

62) 『대한민보』 1909년 9월 19일자.

63) 『황성신문』 1910년 7월 27일자.

한일합방 직후인 1910년 10월의 「경성부내 사립학교 현상 일반(京城府內 私立學校 現狀一斑)」이란 문건⁶⁴⁾에는 그 처음에 양정의숙을 다음 표와 같이 기재하고 있다.

〈표 1〉 『경성부내 사립학교 현상 일반』 조사 내역

學校名	程度	設立 年月日	教員數	修學年限	維持方法及 經費年額	校地坪數	成績ノ 一斑	設立者姓名
位置		認可 年月日	生徒數			校舍坪數		校長姓名
養正義塾	專門	明治 38年 4月 10日	14	三ヶ年	內賜田畜及泲ノ 收入, 授業料 8,352, 070	67	設備相當 成績 可	嚴柱益
西部 都染洞	法律	明治 42年 3月 29日	63			56		代學監 石鎮衡

* 출처: 최기영, 『계몽운동연구』, 272면.

여기서 보듯이 양정의숙의 위치는 서부 도림동이며, 그 교육정도는 전문학 교급이며, 법률과가 있다는 것이다. 설립은 1905년 4월 10일에, 사립학교령에 따라서 1909년 3월 29일자로서 인가를 받았으며, 교원은 14명, 생도는 63명이다. 교육기간은 3년이며, 그 경비는 황실에서 하사한 전답과 보(泲)의 수입과 수업료로 충당하였는데, 1년 경비는 8,352원이다. 이 경비는 1913년에는 11,835원이 된다.⁶⁵⁾ 교지는 67평, 교사는 56평이며, 설비와 성적은 모두 충독부 학무국에서도 인정할 만 하였다. 설립자는 엄주익, 교장은 학감인 석진형이 대신하고 있었다.⁶⁶⁾

64) 이 자료는 한국 학부의 서기관으로 고빙되어 한성외국어학교장을 겸임하고 합방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내무부 학무국 학무과장으로 재임한 쿠마모토(隈本繁吉, 1873-1953)가 소장하던 것으로 渡部學·阿部洋 編, 『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 朝鮮篇』 第67卷(龍溪書舍, 1991)에 수록되어 있다. 상세한 것은 阿部洋, 別集 『舊韓末教育史資料: 幣原垣·隈本繁吉關係文書』 について, 資料集 제63권; 최기영, 한말 서울 소재 사립학교의 교육규모, 『한국 근대 계몽운동 연구』(일조각, 1997), 272면 참조.

65) 『朝鮮人教育私立學校統計要覽』(明治 45年度), 9면.

66) 최기영, 『한말 서울 소재 사립학교의 교육규모』, 동인 『한국 근대 계몽운동 연구』(일조각, 1997), 272면.

이 자료에는 두 번째로 보성전문학교(설립자 李鍾浩, 교장 尹益善), 세 번째로 대동법률전문학교(설립자 趙重應, 교장 李重夏)가 법학 전문으로서 기재되어 있고 교육 정도가 초등인 62개의 학교가 열거되어 있다. 전문과정으로 분류된 6개교는 이들 3개교 외에 해동신숙(海東新塾)과 중동야학교(中東夜學校)가 외국어 교수학교로, 정리사(精理舍)는 수리를 가르치는 학교로 기재되어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정의숙은 한일합방 당시에도 사립학교로서는 상당한 지위와 대우를 받고 있었음을 다음 기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 兩校의 好成績 京城府에서 漢城內의 各 官公私立學校를 視察한다 ㅎ은 別項에 掲載 ㅎ았거니와 普成專門學校와 私立養正義塾의 成績이 良好 ㅎ고 前進의 望이 有 ㅎ을 贊道 ㅎ았다더라.⁶⁷⁾

그리하여 한일합방 이후에도 양정의숙은 신년회⁶⁸⁾와 직원회 개최⁶⁹⁾ 등을 비롯하여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몇 번 보도가 되기도 하였으나, 1913년 양정의숙은 스스로 전문학교에서 고등보통학교로 격하시키고 재학생들은 보성전문학교로 전학시켰다.⁷⁰⁾

● 普專學生의 激增 私立 養正義塾은 今回에 組織을 變更 ㅎ야 財團法人 私立養正高等普通學校로 改稱 ㅎ은 旣報 ㅎ았거니와 元來 同 義塾은 法律을 專門으로 教授 ㅎ던 바 今回 組織을 變更 ㅎ고 同時에 一二年에서 修業 ㅎ던 學生 多數는 私立 普成專門學校 法律科 各 年級으로 轉學 ㅎ었슴으로 普成 學生數는 非常히 增加 ㅎ야 每日 出席生이 各 年級을 通 ㅎ야 三百餘名에 達 ㅎ았다더라.⁷¹⁾

67) 『매일신보』 1910년 11월 29일자.

68) 『매일신보』 1911년 1월 5일자.

69) 『매일신보』 1911년 6월 1일자.

70) 양정동창회, 『양정의 얼굴』, 34면; 고려대출판부, 『六十年誌』, 65면 등 참조.

71) 『매일신문』 1913년 10월 4일자.

한일합방 이후에도 당시의 『매일신보』는 양정의숙이 폐교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나머지 『양정의숙』이라는 논설 속에서 설립자인 엄주익의 교육정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距今十年前 私立教育機關이 零星할 時에 現 塾主 兼 校長 嚴柱益氏는 社會徒弟의 教育이란 者는 誰何를 不問하고 先進된 者의 天職이라는 金言으로 同志를 鼓動하여 氏의 直接 及 間接의 盡力으로 今日 模範的 私立學校가 된 同 養正義塾은 特히 氏의 滿腔한 熱心으로 全經費를 獨擔하여 去 光武 九年頃에는 焦眉의 急務된 法律專門學校로 至公至正한 法官을 養成케 爲하여 李王世子 殿下의 親筆賜額으로 命名을 養正義塾이라 하여 昨年까지 過去 略十個年에 百數十名의 卒業生을 出하니 教育界는 勿論 法曹界에 多大한 美果와 功績을 奏하여 現在 同塾을 出身한 者로 今日 遊手徒食하는 者 無히 辨護士 及 郡守의 地位를 占하는 者 多하다 하니 同塾에 對한 一般의 信望과 名譽가 隆隆하는 當然한 結果라 하겠으나 凡 教育의 方針은 決코 一定一變換 者가 없이 時勢의 變遷을 隨伴하여 時代의 要求된 教旨로 實益活用될 教科를 要함을 現 校長의 先見之明으로 昨年 九月에 敎制를 變更하여 法科는 學期를 畢了치 못하였으므로 夜學으로만 置하고 高等普通學校로 趣旨와 目的을 改하여…(中略)…尤히 實利實益이 有한 實業專門科를 設置코져 한다더라.⁷²⁾

그 후 양정고등보통학교는 법률·경제의 전문과 특설을 계획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한 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⁷³⁾

이와 같이 볼 때 양정의숙은 원래 정치, 법률, 경제 등 고등학문을 교수할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나 법률학 교과목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법률학과의 성격을 띤 전문학교라고 할 수 있다.⁷⁴⁾ 여하튼 양정의숙은 1905년에 설립된 이래

72) 『매일신보』 1914년 2월 26일자.

73) 『매일신보』 1921년 3월 14일자.

74) 이기준, 『한국경제학교육사연구』(한국연구원, 1982), 135면 참조.

8년 동안 백 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교육계와 법조계에 다대한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세의 변천에 따라」 1913년 마침내 문을 닫기에 이른다. 나라가 일본에 흡수 합병되어 비통한 가운데 민족정신의 최후 보루이며 조선 왕조의 얼이 깃든 양정의숙의 폐교는 뜻있는 인사들의 실의와 좌절은 물론 한국인 일반의 고통스럽고 더욱 암담한 피지배자로서의 식민지생활의 전주곡이 시작된 것이다.

다음에는 양정의숙의 교수진에 관하여 간단히 인적 사항을 정리하기로 한다.

Ⅶ. 양정의숙의 교수진

양정의숙은 설립 당시부터 많은 인사들의 찬성금으로 세워졌으며,⁷⁵⁾ 특히 순헌 황귀비(純獻皇貴妃, 1854-1911)의 지원을 많이 받았다.⁷⁶⁾ 엄귀비 전하는 친히 일본의 문물을 시찰하고 귀국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양정의숙과 여학교의 설립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으며,⁷⁷⁾ 자신도 직접 「명문(明文)여학교」의 여교사를 고빙하여 한문을 수학하기도 한 사람이다.⁷⁸⁾

양정의숙의 재정이나 운영상태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전술한 「사립학교 현황 일반」에 의하면, 전문과정의 6개교의 운영 실태에서 그 차이가 매우 심하다. 양정의숙과 보성전문학교는 8,352원과 7,500원을, 대동법률전문학

75) 기준자 명단과 액수는 이영석, 『양정의숙의 혼을 찾아서』, 11면 참조.

76) 황귀비는 황태자(영친왕, 李垓)를 낳은 고종의 계비(繼妃)로서 순헌은 시호(諡號)이다. 황궁 여인들은 황후(皇后 1명), 황귀비(1명), 귀비(貴妃 2명), 비(妃, 4명), 빈(嬪, 6명), 귀인(貴人), 상재(常在), 답응(答應)의 순서로 엄격하게 지위가 구별되었다고 한다. 생전의 공식 명칭은 엄(嚴) 황귀비 또는 황귀비 엄씨였으나, 엄귀비 또는 귀비 엄씨로도 낮게 불렸으며, 일제는 엄비 또는 엄상궁이라고 격하하여 불렀다. 상세한 것은 이영석, 위의 글, 13면 참조 그러나 송우혜의 역사소설 『못생긴 엄상궁의 천하』(푸른역사, 2010)에는 여학교의 설립은 나오지만 양정의숙을 지원한 이야기는 찾기 어렵다.

77) 『황성신문』 1906년 4월 24일자 「女校設立」.

78) 『황성신문』 1909년 4월 15일자 「貴妃殿下漢文學」.

교는 3,852원을 1년 경비로 사용하였다. 이에 반하여 중동야학교는 110원, 정리사는 600원, 해동신속은 659원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양정의숙의 재정상황이 가장 양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밖의 전문과정의 학교는 명목상 전문과목을 교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영성한 운영이 불가피하였다고 보겠다.⁷⁹⁾ 교강사들의 대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가 발견된다.

● 養正塾任員俸給 皇貴妃殿下敍압서 年前에 設立한 養正義塾에 對하야 經費에 補用하라하시고 慶善宮 所管 壓土 數千石 田畝를 下賜하심은 共知하는 바어니와 度支部 土地調查整理局에서 該 土地를 押收하야 該校 經費는 該 土地所出金額으로 支給하라고 互相契約한 結果로 日昨에 該校에서 塾長 以下 一般講師에게 月俸을 磨練하얏는데 塾長 塾監 學監에게는 各 八十圓式 專任講師에게는 各 四十圓式 其外 講師에게는 每 時間에 一圓式 支給하기로 協定하얏다더라.⁸⁰⁾

이로 미루어 볼 때 전임강사와 일반강사가 구별되고 있었으며 한 시간에 1환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양정에서 초창기에 가르친 교수진은 대부분 일본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사람들로 신식 교육을 받은 고명한 인사들이었다. 이른바 해외파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국내에서 공부한 국내파도 몇 사람이 교사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더구나 몇 안 되는 교사 자리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본교 출신과 타고 출신과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었다.

● 養徒質問 養正義塾에서 教師 李珍雨氏를 解雇하고 朱定均氏로 招聘하기로 決定하얏더니 該塾卒業生들이 一齊 邀起하야 發論하기를 本塾 卒業生은 需用치 아니하고 他校 卒業生을 需用한다 하고 質問이 頻數하 故로 該塾에서 決定키 難함으로 姑爲停止

79) 최기영, 앞의 책, 291면.

80) 『대한민보』 1910년 3월 18일자.

흐얏다더라.⁸¹⁾

여기의 『주정균』은 보성전문 출신으로 당시 베스트셀러의 하나였던 『법학통론』의 저자이기도 한다.

여하튼 세 법학전문학교의 교수들에 관한 개별적인 연구는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⁸²⁾ 여기서는 간단히 적어서 문헌 소개로 대체하기로 하고 비교적 덜 알려진 사람들 위주로 서술하여 자료의 발굴에 힘쓰기로 한다. 당시에는 법관양성소를 제외하고 양정의숙과 보성전문에는 전임교수가 없었으며 대체로 공직에 있거나 다른 학교에 적을 둔 이들이 강사로 출강하였으며, 교수가 없고 모두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한다.⁸³⁾

양정의숙의 교수진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김계근(金葵根)

양정의숙 1회 졸업생으로 1908년 8월 30일부터 1910년 2월 23일까지 근무하였다. 저서로 『형법통론(修文書館)』⁸⁴⁾이 있다. 이 책의 광고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형법의 성질은 至強至嚴해야 가히 犯觸치 못할지며 기 理趣는 至深至密해야 능히 測識치 못할지라. 今 是書는 卽 형법의 원리를 講解한 者인디 以若 저자의 명철한 腦識과 웅대한 필력으로 撰述한 고로 기 법리의 정확함과 학설의 新奇함과 註脚의 상세함과 조문의 彰明함은 無論하고 기 문장의 結構布置는 가히 문장가의 수법이라 謂할지오. 且

81) 『황성신문』 1908년 6월 6일자.

82) 상세한 것은 김효진, 『법관양성소의 교수진(1)(2)(3)』, 『인권과 정의』 2003년 6·7·8월호; 동인, 『근대한국의 법제와 법학』, 510-574면 참조.

83) 유진오, 『養虎記』(고려대 출판부, 1977), 38면, 345면; 이기준, 『한국경제학교육사연구』(한국연구원, 1982). 교수 대신에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일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84) 이 책은 1913년에 발간된 것으로 보이며(『매일신문』 1913년 5월 22일자 광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是書는 部類를 整正하며 질서를 보전호 고로 독자의 攻究 에 有補함이 不少호야 尋常 註釋書의 可比호를 바 아니오 兼 且 是書는 諸種 特別法上의 罪犯을 博引호 고로 기 罪 犯의 情態가 가히 千여종에 달호야 正히 千峰競秀萬堅爭流의 觀이 有호지라.⁸⁵⁾

한일합방 이후에는 조선형사령과 일본의 형법이 그대로 조선에도 적용되어 이에 관한 몇 가지의 해설서가 출판되었으며,⁸⁶⁾ 김계근의 저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최초의 저작이라고 하겠다.

2. 김달집(金達集)

양정의숙 1회 졸업생이며, 1911년 4월 1일부터 출강.

3. 김상연(金祥演)

김상연의 호는 수송(壽松)이며 187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899년 도쿄 전문 학교 방어(邦語)정치과에 입학하여 1902년 7월에 졸업하였다. 이 학교는 그가 졸업하는 해 9월부터 와세다(早稻田) 대학으로 교명을 바꾸었다. 1903년 귀국 하여 7월에는 농상공학교 교관, 1905년 4월부터 1906년 2월까지 황성신문사 부 사장, 1906년에는 법관양성소 교관으로 임명되었고 양정의숙에도 출강하였다.⁸⁷⁾ 1907년 홍주 군수, 1908년 9월에는 평안북도 용천 부윤,⁸⁸⁾ 이후 1920년까지 용천과 의주 군수 역임. 1924년까지 강원도 참여관을 지냈다. 그 후의 행적은 알 수가 없다.⁸⁹⁾ 저서와 역서로 『국가학』(1906), 『정선만국사』(1906), 『국법

85) 『매일신보』 1913년 5월 22일자.

86) 예컨대 조성구 저, 유옥경 교, 『형사령 형법 석의』(보문관, 1913; 영인본 관악사 2004), 보문관 편집부 편찬, 『조선현행 형사법규』(1913) 등. 기타 도면회,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형사법과 조선인의 법적 지위』, 권태억 외, 『한국근대사회와 문화』(서울대출판부, 2005), 163-202면 참조.

87) 『만세보』 1906년 11월 27일자.

88) 『황성신문』 1908년 9월 26일자 논설 『送龍川府尹 金君祥演』.

89) 『친일인명사전』(2009), 397면. 상세한 것은 김효진, 『근대한국의 국가사상』(철학과현실사,

학』(1907), 『상법요의』(1907), 『회사법』(1907), 『헌법』(1908?), 『보통교육학』(1908), 『경제학』(1910) 등이 있다.

4. 김진용(金晉庸)

양정의숙 1회 졸업생이며, 1911년 4월 1일부터 출강.

5. 남정규(南廷圭)

1910년 9월 23일부터 재직하였으며 법학 담당.

6. 박만서(朴晩緒)

박만서는 1879년 전남 나주에서 출생하였으며 1895년 관비유학생으로 일본에 건너가 게이오의숙 보통과를 거쳐 1900년 오늘날 일본 주오(中央)대학의 전신인 도쿄(東京)법학원을 졸업하고 귀국하였다. 1906년 3월 법무 법률기초위원에 임명되고 이어서 9월에는 평리원 판사, 12월에는 형법교정관과 법관양성소 교관이 되었다. 이준이 구속된 직후 법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는 죄목으로 견책을 받아 공직에서 해임되었다가 곧 복직되었다. 1909년 6월에는 평리원 판사를 사임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한일합방 이후의 행적은 알 수가 없다. 저서로 『물권법 제2부』(1908?)와 『파산법』(1910)이 있다.

7. 박승빈(朴勝彬)

호는 학범(學凡)이며 1880년 강원도 철원에서 출생. 1907년 일본 주오(中央)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양정의숙에서는 같은 해 9월 12일부터 1908년 7월 11일까지 강의한다. 1908년 법학협회의 발기인. 1908년 관동학회 부회장으로 있다가 평양 검사로 발령을 받는다. 1909년 변호사 개업. 한일합방 이후인

1913년 경성 제2변호사회의 상의원으로 선임되어 1925년 보성전문학교 교장으로 취임하기까지 변호사로 활약한다. 7년간 학교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1931년에는 조선어학연구회를 조직하여 국어 연구에 심혈을 기울인다. 1943년 서울에서 세상을 떠난다. 번역서로 『헌법』(1908), 『언문일치 일본국 육법전서』(1909)가 있다.⁹⁰⁾

8. 백형기(白亨基)

그는 1908년 8월 30일부터 법학을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다.

9. 서봉훈(徐鳳勳)

1909년 9월부터 법학을 담당. 퇴직일자 불명.

10. 석진형(石鎭衡)

석진형은 1877년 서울 근교의 광주에서 태어나 1899년 일본으로 건너가 와부츠(和佛) 법률학교(현재의 호세이[法政]대학)에 입학하여 1902년 7월에 졸업하였다.⁹¹⁾ 귀국해서 1904년 군부 군법국 주사로 관계에 들어가서 1905년에는 법무 법률기초위원, 12월에는 법관양성소 교관으로 임명되어 채권법과 국제법을 강의하였다. 1906년 부동산법조사위원으로 임명되어 이토 히로부미의 법률고문 겸 입법조사 사업을 직접 지휘하던 도쿄대학 교수 우메 켄지로(梅謙次郎)의 통역을 맡았다.⁹²⁾ 양정의숙에는 1905년 4월부터 1911년 3월까지 출강하였으

90) 문헌은 김효진, 『변호사 박승빈』, 『시민과 변호사』, 2000년 6월호, 79-85면; 황인철, 『학범 박승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보』 제14호(1976) 참조.

91) 문헌은 『친일인명사전』, 281-284면; 최종고, 『한국의 법학자』(서울대 출판부, 2007), 85-100면 참조.

92) 우메에 관하여는 李英美, 『韓國司法制度と梅謙次郎』(法政大學出版局, 2005) 및 한역 김혜정 옮김, 『한국사법제도와 우메 켄지로』(일조각, 2011); 이영미 편역, 한국법과 梅謙次郎 『동아법학』 제39호(2007), 289-380면 참조.

며 1910년에는 학감으로서 교장 직무를 대행하기도 하였다. 한일합방 이후인 1911년 4월 법학교 교수, 1913년에는 법학교의 후신인 경성전수학교의 교수를 지내다가 호서은행의 취체역(이사)이 되고,⁹³⁾ 1921년에는 전라남도청 참여관으로 부임한 뒤 1924년 충남지사가 된다. 1926년 전남지사로 전임되고 그 전 해에 있었던 쇼와(昭和)의 대관식에도 참석하였다. 1929년 관료생활을 청산하고 사표를 내었다.

해방 후 그는 과거에 엄주익과 함께 양정의숙을 설립했으며, 법관양성소 등 여러 학교에서 강의하였으며 5천여 명의 제자가 있다고 술회하였다.⁹⁴⁾

11. 신우선(申佑善)

신우선은 1872년생이며 1895년 관비유학생으로 일본에 건너가 게이오의숙에서 보통과와 고등과를 졸업하고 1900년 7월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학의 경제학과를 졸업하였다.⁹⁵⁾ 1901년 일본 대장성에서 견습을 마치고 귀국하였으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가 1904년 법관양성소 교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곧 그만두고 1905년 5월 육군무관학교 교관, 1906년 1월 육군 유년학교 교관, 5월 탁지부 수도권 사무관, 참사관을 거쳐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양정의숙은 1907년 5월 22일부터 출강하였으며, 1905년 4월부터 1908년 2월까지의 보성전문학교 강사를 역임하였다. 1908년에는 법관양성소에서 물권법 제2부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한일합방 이후인 1911년 충남 연산 군수, 1914년부터 1921년까지 조선총독부 아산 군수를 역임하였으며,⁹⁶⁾ 그 후의 행적은 알 수가 없다.⁹⁷⁾ 저서로 『민법총론』(1907)과 『어험법론』(1907)이 있다.

93) 『매일신보』 1913년 3월 23일자 「석교수의 송별회」.

94) 「석진형의 사상 및 과거, 현재 조사」.

95) 『대한제국관원이력서』(탐구당, 1972) 참조.

96) 관보 1921년 12월 27일자 및 박은경, 『일제하 조선인 관료 연구』(학민사, 1999), 221면.

97) 『친일인명사전』, 386면.

12. 안국선(安國善)

근대 한국의 지성사에서 안국선은 정치, 외교, 법률, 문학 등 다방면에 걸친 저술과 많은 번역서를 출판한 사람으로 유명하다.⁹⁸⁾ 조선 정부의 관비유학생으로 게이오의숙 보통과에서 수학한 후 1896년 9월 도쿄전문학교 방어정치과에 입학하여 1899년에 졸업. 귀국 후 광신(廣信)상업학교의 교사를 비롯하여 1906년 돈명(敦明)의숙의 교사로서 정치원론을 강의하였으며, 1907년에는 광신상업학교에서 상법과 행정법 등을 강의하였다.⁹⁹⁾ 양정의숙은 1907년 3월 19일부터 출강하였다. 1907년 체실(帝室) 재산정리국 사무관, 1909년 이재국 국고과장, 한일합방 이후인 1911년부터 1913년까지 경북 청도 군수 역임. 저술로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 정치학 책인 『정치원론』(1907), 『외교통의』(1907), 『행정법』(상하, 1907), 『상행위법』(1907경), 『상업경영법』(1909) 등이 있고 문학으로는 『금수회의록』(1908)과 『공진회』(1915) 등이 있다.

13. 안준호(安駿鎬)

안준호는 1907년 10월 15일부터 양정의숙에서 체조를 담당하였는데 사임일자는 알 수가 없다.

14. 양대경(梁大卿)

호는 소당(笑堂)이며 1885년 평남 순천에서 태어나 1963년 서울에서 작고.¹⁰⁰⁾

- 98) 가장 상세하고 신뢰할만한 안국선 연구로는 최기영, 「안국선(1879-1926)의 생애와 계몽사상(상하)」, 『한국학보』 제63호 및 제64호(1991), 125-160면 및 52-74면, 동인, 『한국근대계몽사상연구』(일조각, 2003), 139-198면에 재수록. 최근 문헌은 김효진, 「안국선의 와세다(早稻田) 시대」, 『동아법학』 제47호(2010), 403-452면; 『친일인명사전』, 431-432면 참조.
- 99) 상세한 것은 김효진, 「안국선의 생애와 『행정법』(상하)」, 목촌김도창박사팔순기념논문집 『한국공법이론의 새로운 전개』(삼지원, 2005), 146-173면 참조.
- 100) 문헌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인물대사전』, 1159면; 최종교, 『한국의 법률가』(서울대출판부, 2007), 111-126면; 이병린, 「에도 양대경 선생」, 김이조 엮음, 『잊을 수 없는 법조인』(서초법률, 1998), 37-39면 참조.

1905년 일본 메이지대학 법과에 입학하여 1908년 7월에 졸업한다. 이 해에는 전영작(全永爵),¹⁰¹⁾ 최석하(崔錫夏),¹⁰²⁾ 이동초(李東初),¹⁰³⁾ 홍성연(洪聖淵),¹⁰⁴⁾ 이희철(李熙轍),¹⁰⁵⁾ 이선경(李善暲),¹⁰⁶⁾ 이종대(李鍾大) 등도 함께 졸업한다. 이들의 졸업에 관하여 『대한매일신보』는 상세하게 보도하였다.¹⁰⁷⁾

그는 바로 귀국한 해 9월 1일부터 법관양성소 강사로 촉탁 받았으며, 양정의 숙은 1908년 10월 20일부터 강사로 출강한다. 이어서 그는 법관양성소 조교수로 임명되었고 1909년 법관양성소가 법학교로 명칭이 바뀌자 법학교 조교수로, 1911년 다시 경성전수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어 이곳의 교유(教諭)가 된다. 1914년 10월 광주지방법원 판사, 1917년 대구복심법원 판사, 1919년 대구에서 변호사 개업, 광복 후인 1946년 5월 대법원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 대법관을 정년퇴직한다.

15. 유문환(劉文煥)

유문환의 구명(舊名)은 창희(昌熙)이며,¹⁰⁸⁾ 1874년 8월 24일에 태어났다.

-
- 101) 전영작은 1902년 일본으로 건너가 세이제(正則)豫備校에서 수학한 후 1903년 9월부터 1905년 도쿄 상공학교 실과를 거쳐 메이지대학 법과를 졸업한다. 논설 『立法 司法 及 行政의 區別과 其 意義』, 『太極學報』 제10호(1907)가 있다.
- 102) 최석하는 1864년생, 일본군 통역, 의주관찰부 주사, 평안북도 도평의원, 1916-18년 평북 지방 토지조사위원회 위원, 1929년 중추원 참의 역임. 『국가론』, 『태극학보』 제1호(1906) 등 몇 가지의 논설이 있다. 細井 肇, 『現代漢城の風雲と名士』(日韓書房, 1910), 227-231면에서는 「세 번 사지(死地)에 들어간 최석하」라고 표현한다.
- 103) 이동초는 1909년 함흥지방법관소 판사, 1910년 평양구재판소 판사 역임.
- 104) 홍성연은 1909년 함흥지방법관소 검사, 1928-29년 중추원 참의 역임.
- 105) 이희철은 1909년 경성지방법관소 서기, 1910년 신의주구재판소 판사 역임.
- 106) 이선경은 1904년 일본 교토 부립(府立) 제일중학을 거쳐 1909년 메이지대학을 졸업하고 다음 해에 충남 공주재판소 판사가 되었으며 1912년 경성재판소에서 변호사명부에 올랐다. 그에 대해서 『滿韓之實業』 제97호(1914)는 「京城辯護士界の新人物」(4)이란 칼럼에서 청년변호사로서 중진이며 「군이냐 조선변호사계의 혁명가로서 끊임없이 건소(健訴)의 폐해를 통탄하고 이러한 폐풍을 일소하려고 이제 연구에 여념이 없다」고 소개하고 있다(74면).
- 107)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19일자(留學生卒業).
- 108) 朴己煥, 『舊韓末と併合初期における韓國人の日本留學』, 『近代日本研究』 第14卷(慶應義塾福澤研究センター, 1997), 226면.

1895년 3월 관비유학생으로 선발되어 1897년 7월 게이오의숙 보통과를 졸업하고 계속하여 오늘날의 주오(中央)대학의 전신인 도쿄법학원에 입학하여 1899년 7월 12일, 유치형, 장도, 이면우와 함께 졸업하였다. 일본의 각 재판소를 실지 견습하고 귀국하여 1905년 1월 사립 한성법학교의 강사가 되었는데 이 학교는 설립자간의 불화로 반 년 만에 폐교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13일 법관양성소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새로이 신식 교육을 받은 젊은 사람들이 교관으로 임명되어 이면우가 소장에 임명되고 유문환도 교관이 되었다. 그리고 1907년에는 변호사시험위원으로도 임명되었다.

유문환은 한일합방 이후에도 변호사로서 활동하였으며 1920년 『조선일보』 사장, 1921년 경성조선인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광복 후에도 생존해 있었다고 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다. 저술로는 『국제사법』(1908), 『경찰학』(1909), 『형사소송법』(1910) 등이 있다.

16. 유승겸(兪承兼)

호는 동은(東隱)이며 1876년 경기도 광주에서 출생하였으며 1895년 관비유학생으로 일본 게이오의숙 보통과와 고등과를 마치고 1897년 5월부터 1900년 7월까지 센슈(專修)학교 이재과(理財科)를 졸업하였다. 1900년 9월부터 1901년 12월까지 일본 대장성(大藏省)에서 견습하고 1902년에 귀국. 1906년 3월 탁지부 주사, 1907년 3월 탁지부 건축사무소 사무관, 7월 서기관. 1905년 4월부터 1908년 2월까지 보성전문학교 강사, 1906년 6월부터 1907년 3월 농상공학교 교관을 역임하면서, 양정의숙은 1906년 4월 9일부터 출강하였다. 한일합방 후에는 조선총독부 군수, 한성은행 평양지점과 대전지점의 부지배인을 지내다가 1917년에 신병으로 사망하였다.¹⁰⁹⁾ 저서로는 『최신경제교과서』(1910)와 『중등만국사』(1909)가 있으며, 박승희·주정균 공저, 『최신 경제학』(1908)

109) 상세한 것은 이기준, 『한말 서구경제학도입사』, 92-105면 참조

을 교열하였다.

17. 유옥겸(兪鈺兼)

유옥겸은 유길준의 장남으로 1907년 4월 보성전문을 졸업하였으며, 양정의 숙에는 1908년 8월 30일부터 1910년 1월 23일까지 출강하였다. 이준, 유성준,¹¹⁰⁾ 유치형 등이 주도하여 설립한 국민교육회의 법학강습소에서 강의하였다.¹¹¹⁾ 저서로 기계(杞溪) 유옥겸 찬술(纂述), 전성(全城) 이풍호(李豐鎬) 교열, 『간명(簡明) 교육학』(1908년, 281면)과 주정균과의 공저인 『정선법학통론』(1911)이 있으며, 보성전문의 동기동창인 조성구의 『형사령·형법석의』(1913)¹¹²⁾를 교열하였다. 『법정학계』에 몇 가지 논설을 발표하였다.¹¹³⁾

18. 유치형(兪致衡)

유치형의 구명은 치학(致學)이며 호는 지동(芝東). 1877년 서울에서 태어나 1895년 관비유학생으로 일본 게이오의숙 보통과를 졸업한 후 1896년부터 1899년까지 도쿄법학원(현재의 주오[中央]대학)에서 공부하였다.¹¹⁴⁾ 법부 법률기초위원을 지내고, 1900년 이후 사립 철도학교 교사, 사립 중교(中橋)의숙 교사, 한성법학교 교사 등을 지내다가 1905년부터 1908년까지 보성전문학교 강사, 1908년 감사원 이사를 역임하였다. 1910년 1월 어원(御苑) 사무국 이사를 지내다가 한일합방을 맞게 된다. 일제시대에는 관직에 나가지 않았으며 1913년 한성은행

110) 최종고 『한국의 법학자』, 2-32면 참조

111) 『황성신문』 1906년 8월 15일자 및 1907년 6월 17일자.

112) 『매일신보』 1913년 8월 6일자 광고에는 「양정의숙강사·보성전문학교 강사,」라고 소개하며, 조성구는 「경무총감부 경시,」라고 저자 소개를 하고 있다. 이 책은 2003년 관악사에서 영인본이 발간되었다.

113) 예컨대 「사법전편찬의 필요,」 제1호(1907); 「自由는 何인가?」 제6호(1907); 「법률가의 역사적 지식,」 제22호(1909) 등.

114) 문헌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인물대사전』(1999), 1364면; 최종고, 『한국의 법학자』, 65-92면 참조.

본점 서무과장을 지내고,¹¹⁵⁾ 1934년 서울에서 사망하였다.¹¹⁶⁾ 저술은 『헌법』(1907),¹¹⁷⁾ 『물권법 제1부』(1907경), 『증거법』(1910경) 등이 있으며, 몇 가지의 논설이 있다.¹¹⁸⁾

양정의숙을 비롯하여 당시의 법학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유치형의 아들인 유진오(兪鎭午)¹¹⁹⁾는 아버지에게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밤에는 1910년 즉 ‘합방’ 때까지 계속하여 한성법학교, 보성전문학교, 양정의숙, 대동법률전문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공무원생활과 교직생활을 반반씩 하신 셈이다. 선친이 법률기초위원을 지내신 일과 보성전문학교 창설 당시의 5,6명밖에 안 되는 교원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나 자신의 이력과 비겨 생각할 때 부자간에는 역시 무슨 운명의 연결 같은 것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양정의숙에서는 당시의 정부 대관들에게 신학문을 강의한 것으로 들었으며 대동법전, 보전 등에서는 헌법, 물권법, 논리학 등을 강의하였다. 대동법률전문학교는 경성고보 아래 창간 당시의 동아일보 사옥이 된 집에 있었는데 나는 그곳에 가서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강의하시는 모습으로 창밖에서 바라본 일이 있다.¹²⁰⁾

19. 이교승(李敎承)

이교승은 1894-1895년 한성사범학교¹²¹⁾를 졸업한 후 1895년 8월 관립소학교

115) 『매일신보』 1913년 3월 28일자 「兪氏의 漢銀執務」.
 116) 최종고는 위의 책에서 「1933년 9월 10일 작고」라고 하나, 유진오의 『養虎記』(1977)에 실린 연보(350면)에 따라서 1934년으로 정정한다.
 117) 2010년 관악사에서 원문 영인과 함께 가로로 새 조판한 책자가 발간되었다. 여기에 첨부한 김효진의 해설 참조.
 118) 예컨대 「민법의 개론」, 『친목회회보』 제6호(1897.12); 「論土地家屋證明規則의 필요」, 『法政學界』 제1권 1호(1907.5)가 있다.
 119) 유진오에 관하여는 이영록, 『유진오 헌법사상의 형성과 전개』(한국학술정보, 2006) 참조.
 120) 유진오, 「片片夜話」각계 원로들의 체험을 엮는 장기 시리즈, 나의 가정환경, 『동아일보』 1974년 3월 17일자.
 121) 한성사범학교에 관하여는 후루카와 아키라(古川昭), 『舊韓近代學校の形成』(ふるかわ海

교원으로 있다가 1896년 5월에는 한성사범학교 교원(판 6)으로 임명된다.¹²²⁾ 1896-1897년 일본 도쿄 合濟學會에서 수학하다가 1897년 이 학교를 중퇴하고 1900년에 귀국한다.¹²³⁾ 1895년 관립소학교 교원, 1896년 5월 한성사범학교 교관, 1907년 2월부터 1908년 2월까지 보성전문학교의 강사를 지내다가 1908년 11월 성균관 교수로 임명된다.¹²⁴⁾ 양정의숙에는 1908년 3월 5일부터 1909년 12월 8일까지 출강하였다. 경제과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수학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저서로 『산술교과서』(상하, 1908), 『신찬 대수학 교과서』(1910),¹²⁵⁾ 논설 『경제학설』(1907)이 있다. 수학 책 『신정산술』은 이교승의 영향을 받아 남원(南原) 양재건(梁在鏞)이 편집한 것으로 본다. 이교승은 저작권과 관련하여 양재건을 고소하게 된다.¹²⁶⁾

20. 이면우(李冕宇)

이면우는 1879년생이며 1894년 관립 일어학교¹²⁷⁾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다음 해인 1895년 3월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에 건너가 1899년 추오(中央) 대학의 전신인 도쿄법학원을 장도, 유창희(유문환), 유치학(유치형)과 함께 졸업하였다.¹²⁸⁾ 당시 이 학교는 3년제였다. 1904년 6월 한성재판소 검사 및 판사, 1905년 법관양성소 교관과 소장을 역임하고 같은 해 변호사로 등록하였다. 1907년에는 이준 사건에서 정명섭과 함께 변호인으로 나서서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하였

事事務所, 2002) 및 이성옥 역, 『구한말 근대학교의 형성』(경인문화사, 2006), 141-178면 참조.
122) 안용식 편, 『대한제국관료사연구: 1895년 4월-1896년 7월』(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117면.

123) 이기준, 『한말 서구경제학도입사연구』(일조각, 1985), 292면.

124) 전 비서감일기 76.

125) 『매일신보』 1910년 9월 18일자 광고.

126) 『황성신문』 1910년 4월 9일자 『저작권의 기소』.

127) 일어학교에 관하여는 稻葉繼雄, 『舊韓末「日語學校」の研究』(九州大學出版會, 1997), 특히 第5章 韓國政府立の「日語學校」(387頁 이하)와 같은 저자의 『舊韓國の教育と日本人』(九州大學出版會, 1999) 참조.

128) 『法學新報』 第100號 1899년 7월 20일자.

다. 1907년 한성변호사회 초대 회장, 1909년-1910년 경성변호사회 3대, 4대 회장 역임. 일제시대에는 사기취재범으로 복역하기도 하였는데,¹²⁹⁾ 시종 재야에 머물렀으며, 통영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는 동안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문안인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매일 감시하였다고 전한다. 1925년 6월 27일(음력) 48세로 작고하였다. 저서로 『회사법』(1908)이 있으며, 몇 가지의 법학 논문을 남겼다.¹³⁰⁾

21. 이은우(李恩雨)

1909년 9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재직. 법학 담당.

22. 이용무(李用茂)

1888년 출생. 1905년 7월 와세다대학 방어정치과 졸업.¹³¹⁾ 양정의숙과 보성전문의 강사를 지냈다. 양정은 1907년 3월 19일부터 1908년 5월 4일까지 재직. 1909년 아깝게도 22세로 요절하였으며,¹³²⁾ 보성전문 학생들은 앞을 다투어 부조금을 출연하였다.¹³³⁾ 저서 『평시국제공법』(1908?)이 있다.

이용무의 죽음을 황성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命耶時耶 養正義塾 及 普成專門學校 講師 李用茂氏는 大志를 夙抱(숙포)하고 多年 海外에 學業을 成就하고 歸國後에는 教育界에 獻身하여 熱心 教授함으로 一般社會

129) 『매일신보』 1911년 4월 13일자.

130) 상세한 것은 김효진, 『이면우의 생애와 저작』, 『시민과 변호사』 2000년 8월호, 85-92면 참조

131) 『第12回 早稻田大學校友會誌』(1905), 37면.

132) 이용무의 죽음과 추도회 소식 등은 『황성신문』 1909년 5월 9일자, 6월 8일자, 6월 12일자 등 참조

133) 『대한매일신보』 1909년 6월 9일자 『學界美舉』. 그리고 『법정학계』 제23호(1909년 5월 5일 발행), 41면에도 그의 卒逝에 대한 보성전문학교 교직원들의 弔辭와 義捐金 收畝의 기사가 실려 있으며, 그의 죽음을 애도한 부고는 『早稻田學報』 제172호(1909년) 교우동정, 4면에도 실려 있다.

의 期望이 甚大호더니 不幸히 沿痾를 遭호야 數日前에 長逝호니 得年이 纔 二十二라. 其所崇의 原因을 聞호는 氏가 恒常 時局에 對호야 過度호는 憂憤을 抱호고 或 登山 痛哭호는 時도 有호지라. 所以로 神經이 耗損호야 漸至危劇호았는디 其屬 廣前 數日은 晝夜 讓語가 皆 痛恨 時事호는 說話오. 以手拊應호야 血結色變호음에 至호야 意至不起호았스니 此 所謂 叢蘭欲茂에 惡豐推之耶아 一般士友가 痛惜不已호더라.¹³⁴⁾

특히 그가 20세 전후의 나이에 『평시국제공법』이란 대저를 저술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가히 천재적이라고 하겠다. 이 책은 「국제법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발행된 최초의 업적」¹³⁵⁾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23. 이진우(李珍雨)

1881년 경남 하동 출생. 1907년 7월 메이지대학¹³⁶⁾ 법과를 졸업한 후 1908년 판사에 임명되었으나 1909년 4월에 퇴직하고 박승빈과 함께 서울 남부 장교동에 변호사 개업.¹³⁷⁾ 양정의숙에는 1907년 9월 12일부터 1908년 5월 30일까지 출강하였다.

24. 이항중(李恒鍾)

그는 1880년 출생이며 1905년 4월 보성전문학교 법과에 입학하여 1907년 4월 제1회로 졸업하고, 이 해 6월 24일에 실시한 우리나라 최초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 이 시험에는 20여 명이 응시하였으나 이항중, 장택환, 허헌, 옥동규, 계명기, 이종성 6인이 합격하였다.¹³⁸⁾ 1907년 9월 이항중은 법관양성소 교

134) 『황성신문』 1909년 5월 9일자. 「이용무」의 한자는 『사진으로 본 양정백년 1905-2005』, 21면의 졸업증서나 진급증서에 모두 ‘李用戊’로 적기 때문에 인용문의 ‘茂’는 옳다.

135) 김용구, 『세계관총들의 국제정치학』(나남출판, 1997), 280면.

136) 메이지대학은 1881년 창립이후 1919년까지 재적한 한국인 유학생수는 598명이다. 메이지 법률학교는 1903년부터 메이지대학으로 개칭하였다. 차己煥, 앞의 논문, 248면, 198면 참조.

137) 『대한매일신보』 1909년 4월 21일자.

138) 관보 제3809호 1907년 7월 4일자.

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여기서는 상법을 담당했다. 그 이후의 행적은 알 수가 없으나 동일은행 흥성지점장을 역임하였다.¹³⁹⁾ 양정의숙에는 1911년 4월 1일부터 출강하였다.

25. 임경재(任璟宰)

임경재는 1908년 3월 5일부터 1909년 12월 8일까지 양정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경제를 담당하였다.

26. 임규(林圭)

임규는 1909년 9월 4일부터 재직. 임규 찬(撰), 『日本語學音·語篇』(東京: 以文社, 1909)의 책자가 있는 것을 볼 때 일본어를 가르친 모양이다.

27. 장도(張燾)

호는 덕수(德水)이며 1876년 출생하여 1895년 관비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 게이오의숙에서 수학한 후 다시 주오(中央)대학의 전신인 도쿄(東京)법학원에서 법률학을 공부하여 1899년 7월에 유창희(劉昌熙, 후에 유문환[劉文煥]으로 개명), 유치학(俞致學, 후에 유치형[俞致衡]으로 개명), 이면우와 함께 졸업하고 같은 해 11월 하순에 귀국하였다.¹⁴⁰⁾ 1900년 사립 광흥학교 교사, 1904년 의

장택환(張宅煥)은 1882년 6월 3일 경북 안동군 출생으로 1909년 12월 판사에 임명되었다가 1910년 12월에 퇴직하여 변호사개업을 하였고, 옥동규(玉東奎, 1868-1944)는 평양 출신으로 1907년 보성전문 법률과를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1908년 국채보상의연금에 관한 양기탁의 재판에서 한국인 변호사로서 활약하였다. 계명기(桂命夔)는 1870년 평남 영유군 출생으로 1909년 7월 12일에 변호사 개업을 하였으며, 이종성(李鍾聲)은 1868년 3월 2일 경기도 수원군 출생으로 1909년에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허헌(許憲, 1885-1951)은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나 1907년 보성전문 법과를 1회로 졸업하고 같은 해 실시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다. 1919년 3.1운동의 33인 대표를 위해서 무료 변호하며, 1923년 보성전문 교장, 1925-26년 조선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 광복과 함께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 1948년 최고인민회의 의장 겸 김일성대학 총장을 겸임하다가 1951년 대령강에서 의사하였다. 이들의 이력은 『서울지방변호사회100년사』(2009), 51면 참조.

139) 김효전, 『근대 한국의 법제와 법학』, 551면.

부 번역관, 의학교 교관,¹⁴¹⁾ 1905년 3월에는 보성전문, 8월에는 양정의숙에서 강의. 같은 해 평리원 검사, 법무 법률기초위원 겸임, 1906년 한성재판소 판사, 법관양성소 교관 겸임. 1908년 변호사 등록. 일제시대에는 조선변호사회 회장을 지내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¹⁴²⁾ 1925년 을축 홍수 때 강릉에서 사망하였다.¹⁴³⁾ 저서로 『신구형사법규대전』(상하, 1907)이 있다.

28. 전영작(全永爵)

전영작은 평양 사람으로 1902년 일본으로 건너가서 세이지(正則) 예비교(豫備校)에서 수학한 후 1903년 9월부터 1905년 7월까지 도쿄 상공학교 실과를 졸업하였다. 같은 해 9월 메이지대학 법과에 입학하여 1908년 6월 최석하와 함께 졸업하였으며, 태극학회의 평의원이었으며,¹⁴⁴⁾ 양정의숙에는 1908년 10월 20일부터 출강하였다. 그는 권력분립이론을 상세하게 소개한 『입법 사법 급 행정의 구별과 기 의의』,¹⁴⁵⁾ 『경제의 공황상태를 논함』,¹⁴⁶⁾ 그리고 『학술상 관찰노 상업경제의 공황상태를 논함』¹⁴⁷⁾ 등 몇 가지의 경제 논문을 썼다.

29. 정경윤(鄭敬潤)

1911년 2월 28일부터 법학 담당.

140) 도쿄법학원에서 공부한 사람으로는 鄭在淳, 兪鎭方, 張奎煥, 朴晩緒, 安慶善, 元應常 등이 있다.

141) 『황성신문』 1904년 3월 19일자.

142) 조선변호사회에 관하여는 정구영, 『조선변호사회』, 『중앙일보』 1973년 12월 16일부터 1974년 2월 24일까지 연재, 중추원에 관하여는 이방원, 『한말 정치변동과 중추원』(혜안, 2010) 참조

143) 상세한 것은 김효전, 장도의 생애와 저작, 『시민과 변호사』 2000년 7월호; 허일태, 장도의 형법이론과 형법사상, 『인권과 정의』 2008년 4월호 참조.

144) 『태극학보』 제22호(1908), 58면.

145) 『태극학보』 제8호(1907), 13-16면; 제10호, 24-27면; 제12호 18-22면에 장문의 논설을 실고 있다.

146) 『태극학보』 제3호, 20-26면.

147) 『태극학보』 제4호, 17-21면.

30. 정규환(鄭奎煥)

정규환 역시 1907년 1월 15일부터 체조를 담당하였으며 사임일자는 불명이다.

31. 정해용(鄭海鎔)

1909년 9월 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재직. 법학 담당.

32. 정희선(鄭熙宣)

양정의숙 1회 졸업생이며, 1908년 8월 30일부터 법학을 담당했으나 과목이나 퇴직일자 등은 미상이다.

33. 조성구(趙聲九)

조성구는 1881년 서울에서 태어나 1907년 4월 보성전문학교 법률과를 제1회로 졸업하였다.¹⁴⁸⁾ 내부 주사, 내부 서기관, 경무국 보안과장, 민적과장 등을 거쳐 한일 합방하는 해인 1910년 조선총독부 경시(警視)가 된다. 양정의숙에는 1908년 3월 5일부터 출강한다. 1912년부터 1917년까지 보성전문 강사를 역임했으며, 1923년에는 교장후보로 올랐다. 1924년부터 1930년까지 천안 군수를 지냈으며,¹⁴⁹⁾ 해방 후인 1945년 8월부터 1948년 9월까지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지냈다.¹⁵⁰⁾ 저서로 『헌법』(1908)이 있으며, 역서로 내부 경무국장 마쓰이 시게루(松井茂)의 『경찰학』(1909)이 있다.

34. 조소양(趙素昂)

조소양은 1887년 경기도 교하군(지금의 파주)에서 태어나 1902년 성균관에 입학하여 신채호 등과 항일성토문을 작성한다. 1904년 7월 황실유학생으로 선

148) 문헌은 김효진,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625-650면 참조.

149) 안용식 편, 『일제 지방관록』(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2001) 참조.

150) 『친일인명사전』(2009), 569면.

발되어 일본의 중학교에 입학, 1912년 메이지(明治)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경신학교, 양정의숙, 대동법률전문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¹⁵¹⁾ 그 후 사회주의운동에 참여하였으며 납북되어 생사여부를 알지 못하다가 1958년 9월 10일에 사망하였다고 전한다.¹⁵²⁾

35. 주정균(朱定均)

주정균은 인천 출신으로 1897년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1900년부터 1907년까지 과천과 인천 등지에서 소학교 교원을 지내다가 1907년 보성전문학교 법과를 1회로 졸업하였다. 군부 군법과에서 잠시 근무하다가,¹⁵³⁾ 법학협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양정의숙에는 1908년 8월 30일부터 1910년 1월 23일까지 출강하였다. 1908년에는 『법학통론』을 저술하였고, 朴承鎬와 공저로 『최신 경제학』(1908)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기타 『상법총론』(1907), 『전시국제공법』(1908년경)의 저서가 있다. 주정균은 보성전문학교와 대동법률전문학교 등에서 법학을 강의하였으며 법학통론과 경제학은 당시의 베스트셀러로서 각각 4천여 부와 3천여 부가 팔렸다고 한다. 1923년 보성전문학교 교장으로 내정되었으나 교우회들이 반대하여 허헌(許憲)¹⁵⁴⁾이 임명되었다.

36. 진경석(陳慶錫)

양정의숙 1회 졸업생이며, 1911년 4월 1일부터 출강.

151) 홍선희, 『조소앙의 삼균주의 연구』(한길사, 1982), 23면; 신우철, 『건국강령(1941.2.28) 연구: ‘조소앙 헌법사상’의 헌법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중앙법학』 제10집 1호(2008), 63-97면; 정태욱, 『조소앙의 <대한독립선언서>의 법사상』, 『법철학연구』 제14권 3호(2011), 45-80면; 김기승, 『조소앙의 육성교 구상에 나타난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한국사연구』 제99집(2002), 163-187면; 李英美 집필, 『趙素昂(趙鏞殷) 1887-1958』, 明治大學史資料センター編, 『明治大學小史 人物編』(學文社, 2011), 224-225면 참조.

152) 『동아일보』 1989년 1월 28일자.

153) 관보 제3818호, 1907년 7월 15일; 면관은 관보 제3876호, 1907년 9월 20일자.

154) 문헌은 허근욱, 『민족변호사 허헌』(지혜네, 2001); 김효전, 『허헌과 변호사 징계』, 『시민과 변호사』 2000년 5월호, 93-98면 참조.

37. 최병찬(崔秉瓚)

최병찬은 1907년 4월 보성전문학교 경제전문과를 졸업하고 1907년 7월 탁지부 서기랑(書記郎)이 된다. 양정의숙에서는 역시 경제를 담당하였으며 1908년 3월 5일부터 1909년 12월 8일까지 재직하였다. 1908년 2월부터 1910년 4월까지 는 보성전문학교의 강사를 지냈다. 번역 논설로 『일본화폐제도』(1908)가 있다.

38. 피상범(皮相範)

1856년 서울에서 출생하여,¹⁵⁵⁾ 1882년에 실시된 증광시(增廣試) 율과(律科)에서 장원급제. 1894년 법부아문 주사가 되고, 1895년 4월 법부 참서관으로 임명되고 5월 신설된 법관양성소의 초대 소장을 겸임하였다. 1898년 3월 법부 검사국장이 되고 법률기초위원을 겸임한다. 1899년 겸임하던 고등재판소 예비판사를 의원면직. 1901년 평리원 검사로 발령을 받아 근무 중 평리원 판사로 전보된다. 1906년 12월 함경남도 재판소 검사, 1907년 경상북도 재판소 검사를 역임하고 8월 한성재판소 판사가 된다. 1909년 변호사 등록. 양정의숙에는 1911년 1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출강하였으며, 이 해에 55세로 작고하였다.¹⁵⁶⁾

39. 홍석현(洪奭鉉)

홍석현은 1873년에 출생하여 1891년 6월 일어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1896년 6월 한국인 제1호로 와세다(早稻田)대학의 전신인 도쿄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1897년부터 1899년까지 일본 제일은행 서기로 근무하다가 귀국하였다. 1900년 10월 관립 중학교 교관이 되었으며, 1906년에는 경무청 경무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1906년 12월부터 1907년 4월까지 학부 참서관을 역임하

155) 『朝鮮人名資料事典』 第1卷(日本圖書センター, 2002), 236頁에서는 현거주지를 「강원도 홍주군」으로 표기하며 현재 변호사라고 적고 있어서 의문이다. 이 책은 『朝鮮紳士名鑑』(1911)을 저본으로 한 것이다. 이 책에 대해서는 정진석, 일본어 ‘조선신문’의 기형적 성장, 조선일보 2010년 6월 30일자 참조

156) 문헌은 김효전, 『피상범의 생애와 업적』, 『시민과 변호사』(2001년 2월), 88-95면 참조

였다. 1907년 4월에는 관립한성고등학교 교장에 취임하였다. 양정의숙에는 1908년 3월 5일부터 출강하여 경제를 담당하였다.

한일합방 이후인 1911년 경기도 평택 군수와 강원도 춘천 군수를 지내고 1923년부터 1929년까지 중추원총탁의 직에 있었다.¹⁵⁷⁾ 저서로 『신찬조선회화(新撰朝鮮會話)』(東京, 博文館, 1894)가 있으며, 『친목회회보』에 몇 가지의 논설을 발표하였다.¹⁵⁸⁾ 그는 재학 중 학자금이 없어 일본인 은사 이치지마(市島謙吉)와 아마노(天野爲之)의 도움을 받았으며 특히 다카다(高田早苗)의 비호를 몽매에도 잊을 수 없다고 회고한다.¹⁵⁹⁾

이상 39인의 교사들 외에 더 있는지도 알 수 없으나 추후에 보완하기로 한다.

VII. 양정의숙의 졸업생

양정고등학교는 6·25 전란 중에 학교 시설뿐만 아니라 학적부와 각종 기록과 자료들이 모두 소실되어 양정의숙의 졸업생 명부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수록한 것은 당시의 신문 『황성신문』과 『만세보』 기타 자료를 통해서 재구성한 것이며 2007년 5월 15일 『양정의숙 연구발표회』(양정의 혼을 찾아서)에서 정리한 것이다. 졸업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157) 『친일인명사전』, 947면.

158) 예컨대 「대조선 군주국 형세 여하」, 창간호(1895.10), 20-27면; 「조선론」, 제2호(1896.3), 10-12면; 「인생행로」, 제4호(1986.12), 14-15면 등이 있다.

159) 「早稻田在學中の感」, 『早稻田學報』 제399호(1928년 5월), 31면. 문헌은 김효전, 『근대 한국의 법제와 법학』, 401면; 早稻田大學 한국유학생회, 『와세다의 한국인: 와세다대학 한국유학생 90년사』(1983), 42면에서는 제1호 졸업생으로 홍석현, 제2호 졸업생으로 이준을 적고 있는데, 이준은 와세다 졸업생이 아니다.

1. 졸업생 명단

제1회 (1908년 4월 15일)

金癸根, 洪達厚, 白寅基, 金景濟, 金浩乘, 白亨基, 高翊相, 朴泰薰, 尹宇植, 安鍾泰, 林益相, 朴熙寬, 高孝源, 鄭熙宣, 金成集, 金鎮模, 崔瑗植, 金潤錫, 劉秉泌, 高錫柱, 崔在澤, 金鎮禹, 朴昌根, 朴興寬, 洪在鵬, 朴益相 (출처: 『황성신문』 1908. 4. 14; 『만세보』 1906. 11. 27)

제2회 (1909년 4월 24일)

徐鳳勳, 趙萬熙, 金演默, 崔柄翰, 尹圻, 李鍾運, 韓鏞元, 文基鼎, 金泳大, 徐基完, 姜景欽, 安鍾元, 嚴基澤, 金應說, 金達演, 尹哲熙, 李範聲, 崔炳翰, [金丙濟] (출처: 『만세보』 1906. 11. 27; 『황성신문』 1909. 4. 2; 『대한제국관원이력서』)

● 法律科卒業生 日昨 養正義塾 法律科에서 第二回 卒業試驗을 設行호았는디 其 卒業生의 氏名이 如左호더라.

優等生에 徐鳳勳, 趙萬熙, 金演默 等 三人이오 及第生에 崔柄翰, 尹圻(윤기), 李鍾運, 韓鏞元, 文基鼎, 金泳大, 徐基完, 姜景欽, 安鍾元, 嚴基澤, 金應說, 金達演, 尹哲熙, 李範聲, 崔炳翰 氏 等 十八人이라더라.¹⁶⁰⁾

제3회 (1910년 3월)

● 養正義塾卒業 今番에 私立 養正義塾 法律科에서 第三回 卒業試驗을 舉行호았는 디 成績은 如左호니

160) 『황성신문』 1909년 4월 2일자 『法律科卒業生』.

優等生 尹教信, 鄭達(정근), 安允濩, 朴泰遠, 及第生 吳宅善, 朴勝燾, 金相敦, 安承謙, 權性淵, 具滋邇(구자용), 金秉珪, 金永喜, 金鏞九, 池基源, 南相哲, 邊始永, 李源喆, 朴性泰, 邊弼永, 安弘默, 鄭淳珩, 尹秉烈, 權晶淵, 尹德炳, 金永覺, 權淵, 尹箕炳, 韓圭禧, 李鍾協 諸氏이라더라.¹⁶¹⁾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짜의 다음과 같은 기사가 발견된다.

● 卒業生協議 日昨에 卒業生 養正義塾 卒業生 一同이 昨日 上午 十時에 該塾內에서 會同하여 各其 三園式 醞集하여 講師 諸氏를 請邀宴待할 事와 商業上에 着手進行할 方針 等を 協議하였다더라.¹⁶²⁾

[경제과] (1910년 1월)

● 養正卒業 今番 養正義塾에서 經濟科 卒業試驗을 經하였는디 優等生과 及第生 氏名이 如左하니

俞喆鎮, 洪箕周, 成樂憲, 金秉玉, 安熙濟, 吳建泳, 李命求, 安商哲, 吳命根, 金相集, 崔承七, 俞泰濬, 元濟商, 金奎榮, 李承烈, 鄭永軫 氏等 十六人이오 及第生은 尹原求, 許炳, 金翼濟, 徐庸熙, 崔永澤, 安商說(안상열), 南重燮, 李晶宇, 姜重遠, 吳一繼(오일찬), 金怡鉉(김이현) 氏等 十一人이라더라.¹⁶³⁾

그러나 『양정백년사』에서는 「그들이 졸업했어야 할 1910년 봄의 경제학과 졸업생 명부는 오늘날 결여되어 있다」¹⁶⁴⁾고 적고 있다. 또 『양정동문록』의 학교 연혁에서도 「1914년 3월, 6회의 법률학과 졸업생과 1회의 경제학과 졸업생을 배출」이라고 기록하고 양정의숙의 졸업생 명단은 신지 않고 있다.¹⁶⁵⁾

161) 『황성신문』 1910년 3월 24일자.

162) 『황성신문』 1910년 3월 24일자.

163) 『황성신문』 1910년 1월 19일자.

164) 『양정백년사』, 65면.

제4회 (1911년 7월 9일 28명이 졸업하였으나 명단이 확인되지 않음)

康容杓, 한용현(YC 30 진술)¹⁶⁶⁾

제5회 (1912년 7월 6일 졸업했으나 졸업생수와 명단이 확인되지 않음)

具滋燻 (양정의숙 발행 졸업증서)

제6회와 제7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1910년 4월 7일 83명의 응시생 중 31명이 합격함.

1911년 4월 1일 80명의 응시생 중 40명이 합격함.

기타 양정의숙의 졸업 여부나 횃수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로는 박상진(朴尙鎭), 김덕기(金德基), 오혁태(吳赫泰), 김형복(金亨復), 경원식(景元植), 경일영(景一永), 유재호(劉在호) (『만세보』 1907. 2. 5) 등이 있으며, 양정의숙에서 졸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로는 오형근(吳炯根), 홍종대(洪鍾大), 안정근(安定根), 이희승(李熙昇), 박준호(朴準鎬) 등이 있다.

졸업생들의 활동 중 가장 뛰어난 것은 제1회이다. 진경석, 김진용, 김달집은 모교에서 강의를 맡았으며, 고익상은 법관양성소 교관을 역임하고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정명섭 등과 함께 상소문을 올린 사람이다. 상소문을 올린 직후 이들은 모두 교관직에서 물러난다.¹⁶⁷⁾ 김계근과 윤우식은 양정의숙에서 창립된 법학협회가 1908년 6월 21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법률분야의 토론자로서 참가한 사람이다.¹⁶⁸⁾

김계근의 저서 『형법통론』은 체계적이며 정교한 대저로서 한일합방 이후에도 계속 판매되었으며, 박희관(朴熙寬)은 법학협회의 회원으로서 『조선현행 법규대전』(수문서관, 1911)¹⁶⁹⁾을 펴낸 사람이다. 유명필(劉秉泌)도 양정 출신으로

165) 『양정동문록』(양정동창회, 2006), 5면.

166) 『양정의숙 연구발표회』, 21면. 『매일신보』 1911년 7월 9일자. 확인 요망(?)

167) 상세한 것은 김효전, 『근대 한국의 법제와 법학』, 524-525면 참조

168) 『황성신문』 1908년 6월 18일자.

169) 이 책은 1997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영인본을 발간하였다.

여러 가지 논설을 발표한 사람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양정의숙은 1905년 5월 12일 70명의 학생이 입학하여 1908년 4월 13일 2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조선교육령에 의해서 양정고보로 격하될 때까지 법률학과는 6회, 경제학과는 1회의 졸업생을 내어 총 145명이 양정의숙을 졸업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양정총동창회 제1회 졸업생은 1917년 양정고보를 졸업한 22명에서 시작하며, 양정의숙에서 공부한 사람들의 명단은 누락되어 있다. 이것은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근대 법학교육의 한 장을 차지하는 학교에 대한 기록으로는 너무나 허술하고 또 이처럼 방치된 것이 안타깝기도 하다.

2. 졸업생 수용

양정의숙은 법률과와 경제과의 두 과로 구성된 만큼 졸업생들은 당연히 법조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대세일 것은 누구나 예상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와 거리가 먼 것 같았다. 우선 다음의 신문기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하후하박 법관양성소 졸업생 모모씨는 이번엔 판검사를 서임하였는데 양정의숙과 보성학교 졸업생들도 법률과 자격은 일반이어서 법관양성소 학도만 서임하는거시 공평치 아니하다하고 다른 사람의 물론도 자자하다더라.¹⁷⁰⁾

● 졸업생탁용 법률졸업생과 보성학교 졸업생과 양정의숙 졸업생 중에 공부가 제일 나흔 자로 탁하야 디방에 귀는 경시와 경부를 서임한다는 말이 잇더라.¹⁷¹⁾

● 즈원입학 법관양성소 장모씨가 일본교장에게 통첩하고 일어졸업생을 본소로 보내

170) 『대한매일신보』 1908년 6월 26일자.

171) 『대한매일신보』 1908년 8월 8일자.

여 법률을 공부케 하라 하였으나 그 졸업생들이 원치 아니하고 일제히 대동전문학교로 입학하기를 청원한다 하였더라.¹⁷²⁾

● 勿退愈進 法部大臣 高永喜氏가 發論호되 内外國間에 法律卒業호인 人은 壹無可用이라호 故로 各 法律學校 學員들이 此 言을 聞호고 法律卒業에 退步호을 思想이 或 有호야 其他 師範學校나 測量課에 受業호기를 改圖호한다는 說이 有호더라.¹⁷³⁾

전체적으로 볼 때 법관양성소 출신을 우대하여 각 재판소 서기로 임용하고 양정의숙이나 보성전문의 법률졸업생은 그 다음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발한 것으로 보인다.¹⁷⁴⁾ 또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될수록 각 지방구재판소와 지방재판소 지부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보다는 일어 해독자만으로 충당하는 사례도 나타나게 되었다.¹⁷⁵⁾

VIII. 결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고불역의 진리이다. 더구나 서세동점이니 하여 제국주의가 동아시아를 침략하는 위기의 시대에 있어서 국방과 교육은 그 가장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이 두 가지를 소홀히 하여 우리는 근대세계사에서 낙오자가 되고 노예로 전락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법학교육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간파하고 양정의숙을 세운 엄주익의 혜안은 높이 평가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언론에서도 애석히 여기고 한탄했듯이 군부를 폐지하고 사법

172) 『대한매일신보』 1908년 3월 24일자.

173)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6일자.

174) 『황성신문』 1909년 10월 1일자 『法官卒業生需用』; 『대한민보』 1909년 10월 5일자 『判檢事 敘任件』; 동 10월 22일자 『十三人入格』.

175)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11일자 『卒業何用』.

권을 강제적으로 일본에 위임하게 되면서 법학에 대한 인기는 급격히 하락하고 마침내 종언을 고하게 된다. 교수진의 빈곤이나 열악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교수들과 학생들은 열의에 차서 법학을 공부하였지만 장래를 기약할 수 없는 형편에다가 일본의 유형무형의 탄압으로 양정의숙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보성전문처럼 좀 더 버텨 나아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지만 양정의숙의 『몽이양정(蒙以養正), 양심정기(養心正己)』의 정신은 아직도 양정고등학교에서 연면히 계승하고 있는 한 양정의숙의 법학교육은 우리들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2012. 2. 29)

■ 참고문헌

- 『大韓帝國官報』, 『皇城新聞』, 『大韓每日申報』, 『萬歲報』, 『大韓民報』, 『每日申報』
朝鮮總督府 『官報』, 『朝鮮』
『朝鮮人名資料辭典 第1卷』, 日本圖書センター, 2002.
『대한제국관원이력서』, 탐구당, 1972.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9.
안용식 편, 『일제 지방관록』,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인물대사전』(1-2권), 중앙 M&B, 1999
- 『양정백년사 1905-2005』, 2006.
『양정동문록』, 양정동창회, 2006.
『양정의 얼굴: 개교60주년기념』, 1965.
양정의숙연구회, 『양정의숙 연구발표회』(양정 의숙의 혼을 찾아서), 2007년 5월 15일, 양정고등학교 대강당.
양정중고등학교 · 양정총동창회 주최, 『대한제국 법학전문학교 교과서 특별전』, 국립중앙도서관, 2008년 5월 6일부터 20일까지.

- 김효전,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철학과현실사, 2000.
- _____, 『근대한국의 법제와 법학』, 세종출판사, 2006.
- _____, 『법관양성소와 근대 한국』, 소명출판, 2012.
- 박은경, 『일제하 조선인 관료 연구』, 학민사, 1999.
- 서울지방변호사회, 『부록·자료집』, 『서울지방변호사회백년사』, 2009.
- 이기준, 『한국경제학교육사연구』, 한국연구원, 1982.
- 최기영, 『한말 서울 소재 사립학교의 교육규모, 동인』, 『한국 근대 계몽운동연구』, 일조각, 1997.
- 최종고, 『한국의 법률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_____, 『한국의 법학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朴己煥, 『舊韓末と併合初期における韓國人の日本留學』, 慶應義塾福澤研究センター, 『近代日本研究』 第14卷, 1997.
- 稻葉繼雄, 『舊韓國の教育と日本人』, 九州大學出版會, 1999.
- 堀辰之助編, 『英和對譯袖珍辭書』(1862), 杉本つとむ編, 『江戸時代翻譯日本語辭典』, 早稻田大學出版部, 1981에 영인.

<Abstract>

Legal Education in Yangchung College

Kim, Hyo-Jeon*

In this article, the author attempts to record and reproduce the existence of Yangchung college systematically. This college was established in 1895 as a representative legal institute as well as the National Law School and Bosung college, maintained until 1913. Its educational motto was ‘蒙以養正’(grow up justice with enlightenment) in I Ching(周易) by founder Om Chuick.

This paper consists of 8 chapters: Introduction, founder and his educational motto, curriculum and its practices, Yangchung and Legal Association in 1908, decline of Yangchung, faculty members, graduates, and conclusion. Especially the author collected and made the list of faculty members, and analysed their lives and activities.

Although Yangchung college was closed under the pressure of Japanese regime during the colonial area, its educational spirit has continued to Yangchung high school as the same name.

[Key Words] Yangchung, Legal Education, Legal Scientists, Modern Korea

접수일 : 2012. 2. 29., 심사일 : 2012. 3. 12.~4. 12., 게재확정일 : 2012. 4. 12.

*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ublic of Korea, Professor Emeritus at Dong-A University